

지자체 실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1996. 12.

남영숙

## 序 言

산업혁명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학문명의 발전은 대기·수질오염 및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시켜 왔으며, 또한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현상, 산성비 강하,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및 관리가 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21」에서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할을 제고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 지자체의 실시 이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많은 행정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많은 환경관리 기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보전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실시 이후 개발우선주의의 사고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도처에서 개발위주의 골프장·콘도·위락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환경훼손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 실시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목적은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에 있

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1982년 부터 시행한 이래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용하여 왔습니다만, 지자체 실시에 따른 '정책수단의 분권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을 제외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지는 동 제도는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게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능동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남 영숙 책임연구원께 특별히 감사드리며,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등을 맡아준 한 영해 연구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심사를 기꺼이 맡아주신 본 연구원의 정 회성 박사, 김 강석 박사와 환경부의 이 덕길 국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 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 없는 연구원 개인의 사견임을 밝혀둡니다.

1996년 12월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원장 김 종기

# 제 목 차 례

<b>제 I 장 서 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2
<b>제 II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b> .....	5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정의 .....	5
2.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논의 .....	6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제동향 .....	10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	12
<b>제 III 장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현황</b> .....	15
1.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	15
2.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 분석 .....	17
2.1 중앙-환경부 .....	17
2.2 지방-특별환경행정기구(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의 기능 .....	20
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 분석 .....	21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23
3.1 제도상의 문제점 .....	23
3.2 운영상의 문제점 .....	23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	32
4.1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유형 및 환경문제 증가 .....	32
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	42

**제 IV 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 45**

- 1. 외국 사례분석 의의 및 사례의 선정 ..... 46
- 2. 독일의 사례 ..... 46
  - 2.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 46
  - 2.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체계 및 기능 ..... 47
  - 2.3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 48
  - 2.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 49
  - 2.5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 ..... 50
  - 2.6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 51
  - 2.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 52
- 3. 일본의 사례분석 ..... 53
  - 3.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 53
  - 3.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역할 분담 ..... 55
  - 3.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 57
  - 3.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 ..... 59
  - 3.5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주체(검토 및 조정, 관리, 작성) · 60
  - 3.6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항목 ..... 62
  - 3.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 64
- 4. 비교분석 결과 및 평가 ..... 64

**제 V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66**

- 1.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추진방향 ..... 66
- 2.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의 정비 ..... 68
  - 2.1 법적 근거의 마련 ..... 68
  -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집행체계 구축 ..... 69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 74
  - 3.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시기 ..... 75
  - 3.2 평가대상 ..... 75
  - 3.3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 79
  - 3.4 평가주체 ..... 95

3.5 환경영향평가 절차 .....	96
3.6 주민참여제도 .....	105
3.7 평가서의 검토 .....	106
3.8 사후관리 .....	107
3.9 사후환경영향조사 .....	108
<b>제 VI 장 결 론 .....</b>	<b>109</b>
<b>참고문헌 .....</b>	<b>113</b>
<b>부 록 .....</b>	<b>118</b>

# 표차례

<표Ⅱ-1>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전망 .....	9
<표Ⅲ-1> 년도별 환경관리청 협의 실시 건수의 분석(1990-1995) .....	21
<표Ⅲ-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건수 .....	22
<표Ⅲ-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율 .....	24
<표Ⅲ-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조직 .....	26
<표Ⅲ-5>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조직 .....	29
<표Ⅲ-6> 중앙과 지방 환경공무원 교육기간 분석 .....	30
<표Ⅲ-7>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현황 .....	32
<표Ⅲ-8> 지방자치단체 주요 개발사업 내용 .....	33
<표Ⅲ-9>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35
<표Ⅲ-10> 6대도시 대기오염도 (1993. 1994) .....	41
<표Ⅲ-11> 6대도시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1993. 1994) .....	42
<표Ⅲ-12> 도로변지역 소음실태(1995) .....	42
<표Ⅳ-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대상 (독일) .....	49
<표Ⅳ-2>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 분석 .....	51
<표Ⅳ-3>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연혁 요약 .....	54
<표Ⅳ-4> 동경도 환경보전국의 조직 .....	56
<표Ⅳ-5> 가와사끼市 환경영향평가 대상개발행위 .....	58
<표Ⅳ-6> 일본의 환경평가 항목 .....	62
<표Ⅳ-7> 동경도의 지역개황 조사항목 .....	63
<표Ⅴ-1>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 .....	81
<표Ⅴ-2> 건축물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서식 .....	84
<표Ⅴ-3> 교통계획 수립시의 환경영향별 평가항목 및 서식 .....	88
<표Ⅴ-4> 공공기관 구매물품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서식 .....	94
<표Ⅴ-5> 예비환경성평가 기준 .....	102

# 그림차례

<그림 I-1> 연구추진 체계도 .....	4
<그림 III-1> 환경부 조직기구표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	19
<그림 III-2>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 .....	25
<그림 III-3>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실시절차 .....	36
<그림 III-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절차 .....	37
<그림 III-5> 도시재개발사업절차 흐름도 .....	38
<그림 III-6>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실시절차 .....	39
<그림 III-7> 건축허가 절차도 .....	40
<그림 IV-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 .....	50
<그림 IV-2>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흐름도 .....	60
<그림 V-1>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의 재정립 .....	70
<그림 V-2> 법규 및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영역 비교 .....	70
<그림 V-3> 정책이행 메카니즘과 SEA 와 EIA 체계 .....	76
<그림 V-4> 환경영향평가절차 .....	98
<그림 V-5> 예비환경성평가기준 .....	102

## 제 I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혁명 이후 서구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은 끊임없는 자연에 대한 도전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결과 대기·수질오염,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 시켰으며, 또한 이는 오존층의 파괴, 사막화 현상, 산성비, 지구온난화, 열대림훼손 및 자원고갈 등의 양상으로 환경문제가 보다 복잡화·다양화·광역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광역적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 이행하여 왔으나, 지역적 차원에서 환경보전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오염저감 및 비용절감 효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이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및 관리 역할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Agenda21」(Chapter 28)에서는 「개발과 환경의 통합」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경제, 사회, 환경 조직을 구성·운영·유지하고 지역환경정책과 규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국가적 광역환경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등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할을 제고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1995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많은 행정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보전의 주체가 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행정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대단위 골프장

·콘도, 온천 및 유원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sup>1)</sup> 또한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채취함으로써 최근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우선주의에 따른 환경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기존의 우리나라(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 정책 및 계획절차에서는 개발과 보전의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미비함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가 구상하고 있는 「환경복지국가」 또는 「녹색국가」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 최근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기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sup>2)</sup> 특히,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실시에 따른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보다 효과적 지역환경보

- 
- 1) 강현욱,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다」 경향신문 1997년 2월 17일자, 23면 참조.
  -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선진국 및 경제협력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사후관리대책보다는 예방적 관리가 보다 경제적·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대표적 예방환경정책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을 정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 및 행정자료의 분석·평가 및 관계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한 제도적·구조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I 장은 연구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 II 장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도가 갖고 있는 의의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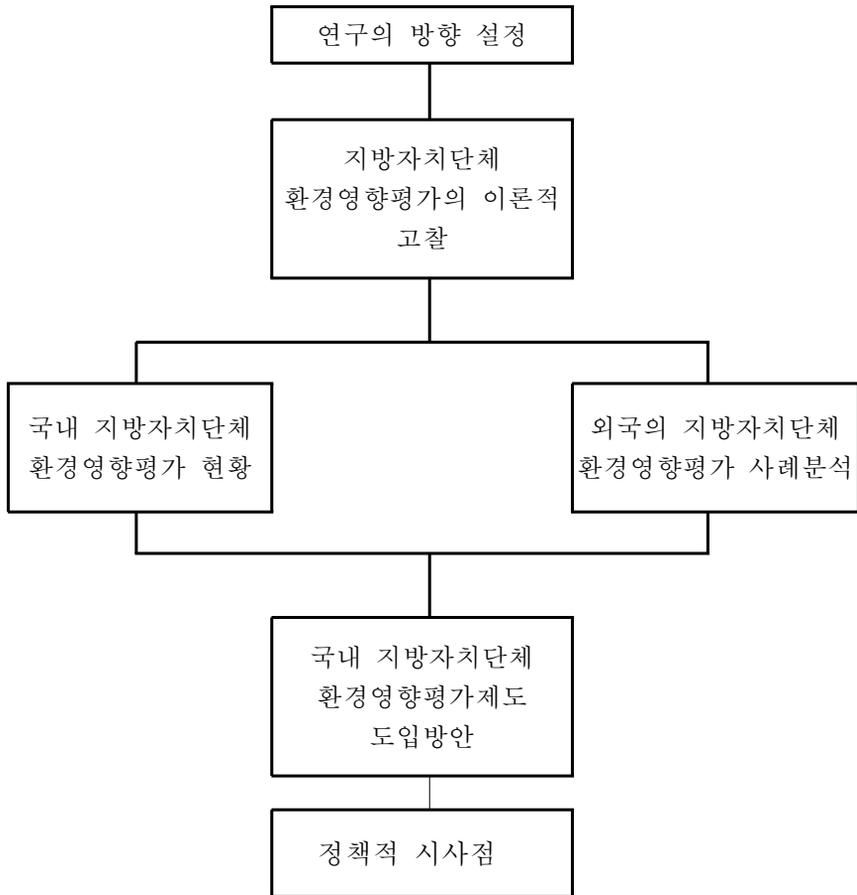
제 III 장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도입 운용을 위한 향후추진방향 설정을 위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 IV 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성공적 실시사례를 분석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강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 V 장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먼저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여건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을 정립하였다.

제 VI 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추진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I -1>과 같다.



<그림 I-1> 연구추진 체계도

## 제II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제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실시되어지는 평가제도를 일컫는다.<sup>2)</sup>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는 「지방환경영향평가」 및 「지역환경영향평가」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지방환경영향평가’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의미한다. 지방이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리청을 함께 포함하고 있으나, 그 기능 및 법적 위치 등은 매우 상이하다.<sup>3)</sup> 따라서 지방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중앙정부, 즉 환경부의 위임업무를 이행

- 
- 2)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독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미비한 상태이다.
- 3)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란 법적 법인격을 부여 받은 법인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어떤 유형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비록 현지 지방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지방정부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환경관리청은 환경부의 업무를 지방에서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직접적인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금창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95-6, 1995).

하는 특별행정기구인 환경관리청(또는 지방환경관리청, 출장소)이 담당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역환경영향평가’란 지역환경용량 및 지역별 배출기준 등을 설정하여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sup>4)</sup> 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중의 하나가 예측된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환경기준치를 일률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지역의 환경용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요건을 갖고 (자율적, 또는 타율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일컫는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논의

국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동향을 분석하면, 지자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

4) 김귀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기법의 발전방안」, 『환경영향평가』 제2권 제1호, 1993, 19면.

5) 대전광역시 및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자체가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역환경영향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대부분 대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규모의 사업일지라도 지역의 환경민감성 및 입지의 조건 등에 따라 환경영향을 크게 야기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목적은 현행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있다.<sup>6)</sup>

동 평가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1997년 상반기에 시행령의 제정과 아울러 동법이 발효될 것을 예상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령의 법적 효력발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1996년 환경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경상북도는 현재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1 참조). 서울특별시는 1996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서울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및 계획은 사업승인전 환경성을 검토할 방침”으로 “1996년내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해 절차·방법·대상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환경기본조례」 제12조 지역환경영향평가 제1항에서 “시장은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6) 정도영,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설명」,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 환경영향평가협회, 1996. 11, 3-13면.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지역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구 및 인천광역시는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그 외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인 순천시의 경우, 지난 6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환경기본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지자체는 환경기본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sup>7)</sup>

---

7) 각 지자체 환경보전 관련 담당공무원과의 직접 면담에 의해 분석된 내용이다.

<표II-1>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 제정 현황 및 전망

지방자치체명	지방의제 21 작성*	지방의제 작성 추진협의체 구성	환경선언제정	환경기본조례제정	환경영향평가조례제정	담당부서	비고
서울	서울의제 21('96.12 예정)	녹색서울시민위원회(1995.11.22)내 서울의제21포럼구성(96.10예정)	서울환경현장례(96.6.5)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96.5.20)		환경계획과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예산확보
부산	녹색도시 부산21(95.9.16)	녹색도시 21 추진협의회 구성(95.8)	부산환경선언(95.9.19)	97.1 (예정)	계획미정	환경보호과	자치구 의제21, 기업의회제21증 준비
인천	그린인천 시민실천과 21(96.6.3)	그린인천21위원회(95.9.10), (사)깨끗한 인천 만들기 시민연합(96.9.10)	그린인천 선언(95.4.5)	97.1 (예정)	현재 계획안 관련 97.7 (예정)	환경보호과	차량소유자 104명으로 구성된 그린인천운행 21패트roller 운영(95.6.3)
대구	맑은 대구 푸른 대구 21(96.10)	추진실무위원회 구성(95.12.23) 추진협의회 구성(준비중)	96.10.22	공포예정	'97년 상반기 상준비예정	환경정책담당관실	경실련 주최의 제1차워크숍(95.11.12)
대전	대전의제 21 ('97 예정)	시민환경회의 발족(96.9.10)	대전환경현장례(96.6.5)	대전시환경기본조례(공포) 96.4.15	'97년 상반기 상준비예정	환경정책과	지방의회제21전략계획인 생태도시계획수립(96.5)
광주	푸른광주 21(96.12 예정)	(사)푸른광주21협의회의(95.10.27)	광주환경선언(96.6.5)	97. 상반기 (예정)	계획미정	환경관리과	푸른광주21협의회의 백서 발간예정
안산	상록안산 2 ('96.7.1)	실무위원회구성(95.9.5), 안산발전위원회(96.2.)내에 녹색도시안산환경감각시단 설치예정(96.10)	안산시환경선언(96.7.1)	97.1 (예정)	계획중	환경보호과	21세기안산시민환경회의가 시민환경선언 및 시민관 지방의회 제 21인 안산시 환경행동강령 채택(94.11.26), ICLEI가입(96.8.4)
순천	그린순천 21(96.12 예정)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96.2.14)	순천환경선언(96.10.15예정)	순천시환경기본조례(96.6)	계획예정중	정책개발실	민선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ICLEI가입중
청주	푸른청주 21(97.6 예정)	추진조직체 구성	97.6 청주시민환경선언문 채택(예정)	추진중(의제21작성후 제정예정)	환경기본조례제정후 준비	환경보호과	청주시청에서 교수, 환경단체, 의회의원 등 간담회 개최(96.1.25)

주: 1996. 11 현재 자료이나, \*는 '96. 9 자료임.  
 자료: 이창우, 「우리나라 도시의 환경보전적 실태와 과제」 1995에서 정리.  
 <표Ⅱ-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자체 실시 이후 환경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기능 및 역할이 제고됨에 따라, 「지방의제21」의 발표, 주민과 정부기관간 환경보전 추진협의체 등의 결성, 환경선언의 발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등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고, 지역환경문제가 심각한 지자체일수록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환경조례의 제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을 적극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기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환경조례의 제정 및 환경영향평가조례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국제동향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선진국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 몇 개국가들에 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연방 또는 국가차원보다 지자체가 더욱 엄격한 규정으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이들 국가는 일정 규모 및 분야의 평가대상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8) 독일은 연방환경영향평가법이 1990년에 제정된 반면,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조례 등의 제정은 80년대 초반이후부터 성행되기 시작하여, 현재 200여개의 지자체 조례 또는 자치단체장 직무교시 등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중앙정부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과 함께, 후쿠오카(1973년), 가와사키(1976년) 등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내용은 제Ⅳ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데,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대상을 제외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OECD 회원국가들 중 환경보전이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예비환경성평가제도(Screening)의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평가대상사업이 대규모의 사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사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에서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개념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 프로그램 및 계획의 수립시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sup>9)</sup>

위와 같이 대표적인 환경선진국가들의 경우,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와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입하지 않는 국가는 중소규모의 개발사업 및 계획분야까지도 환경성평가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역할 제고는 1980년대 말 이

---

9)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부문까지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영숙,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평가모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10) Ch. Woo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 comparative review" 1995; A. Gilp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1995; J. Glasson, R. Therivel, A. Chadwick,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994 등의 국가별 사례 분석 부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후부터 국제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제지방정부환경협의체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CLEI)<sup>11)</sup>는 제1회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수단 및 환경예산 제고’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동 세미나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환경영향평가 역할제고를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모든 지자체의 행위는 예방적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가 미래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sup>12)</sup> 이와 같은 주장은 예방적 환경보전이 파괴된 환경오염처리기술비용 (end-of-pipe technology)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 현재 제한적으로 도입 운용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고됨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행위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세로 발전되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ICLEI 회원국가 및 EU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및 기대효과

---

11) ICLEI는 지방관련기구의 회원조직과 지방정부의 협의체로서 이는 국제 지방기구연합(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과 공식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12) M. Storksdieck, K. Otto-Zimmerman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n example for environmental controlling, First International Expert Seminar 「Advanced Environmental Management Tools and Environmental Budgeting at the Local Level」, March 14-16, 199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환경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모든 행위 즉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환경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의도하는 사업계획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도 그 사업의 실시를 방지할 수 있다.

셋째,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넷째, 예방적차원에서의 환경보전을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다섯째, 환경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으로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 및 환경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실시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가 지방정부 및 사업자에게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능동적·적극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 및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환경보전 달성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환경질 및 삶의질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도출된 환경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으며, 지역환경정보의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을 원활하게 수립 이행할 수 있다.

다섯째,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법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보다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역환경보전을 달성함으로써 국가환경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Ⅲ장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현황

### 1.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평가제도가 시행된 것은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의 제정·고시 이후인 1982년 부터이다.<sup>13)</sup>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됨으로써 환경법체계가 전면 개편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관련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sup>14)</sup>에 반영되어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였다.<sup>15)</sup>

환경문제가 날로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심각해지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용에 대한 관심이 사회 각계에서 팽배해지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을 단일법으로 제정 운용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단일법으로의 제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sup>16)</sup> 이에 1995년의 제1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

13) 환경보전법은 1차(1979. 12), 2차(1981. 12), 3차(1982. 12), 4차개정(1986. 12)을 거쳐 완성되었다.

14) 환경정책기본법은 1차(1992. 8) 개정되었다.

15) 정도영, 전계논문, 1996 및 박종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세미나, 1994 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제도의 도입, 시행, 발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16) 세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단일법으로 제정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 몇 개 국가들 뿐이다.

의견 수렴방법 등을 개선하게 되었다.

평가서의 객관성 미비, 평가서 검토의 불합리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미비에 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거론됨으로써,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기관의 설치 및 환경영향재평가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정안이 마련되었다.<sup>17)</sup>

위와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위주로 도입 운용되고 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중앙 및 연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를 위임하였고, 동법 제1차 개정(1992. 8)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중 일부를 지방환경청에 위임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지방환경청에 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협의내용의 미이행 또는 사전 공사시공사중지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시켰다. 또한 동 법에서는 평가대행자 지정·관리업무를 지방환경청에 위임시켰다.

1993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자가 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서의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등의 업무를 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분담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17)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재실시하는 환경영향재평가제도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 2. 중앙과 지방간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 분석

### 2.1 환경부의 기능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는 자연보전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 산하에 평가제도과와 평가분석과를 두고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III-1). 환경부 관련 과별 그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제도과는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운영, ②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 ③ 평가대행자 지정·관리 총괄, ④ 이 외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단조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전 협의를 관장하고 있다.<sup>18)</sup>

평가분석과는 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②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의 운영, ③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강구, ④ 협의내용의 관리에 관한 사항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sup>19)</sup>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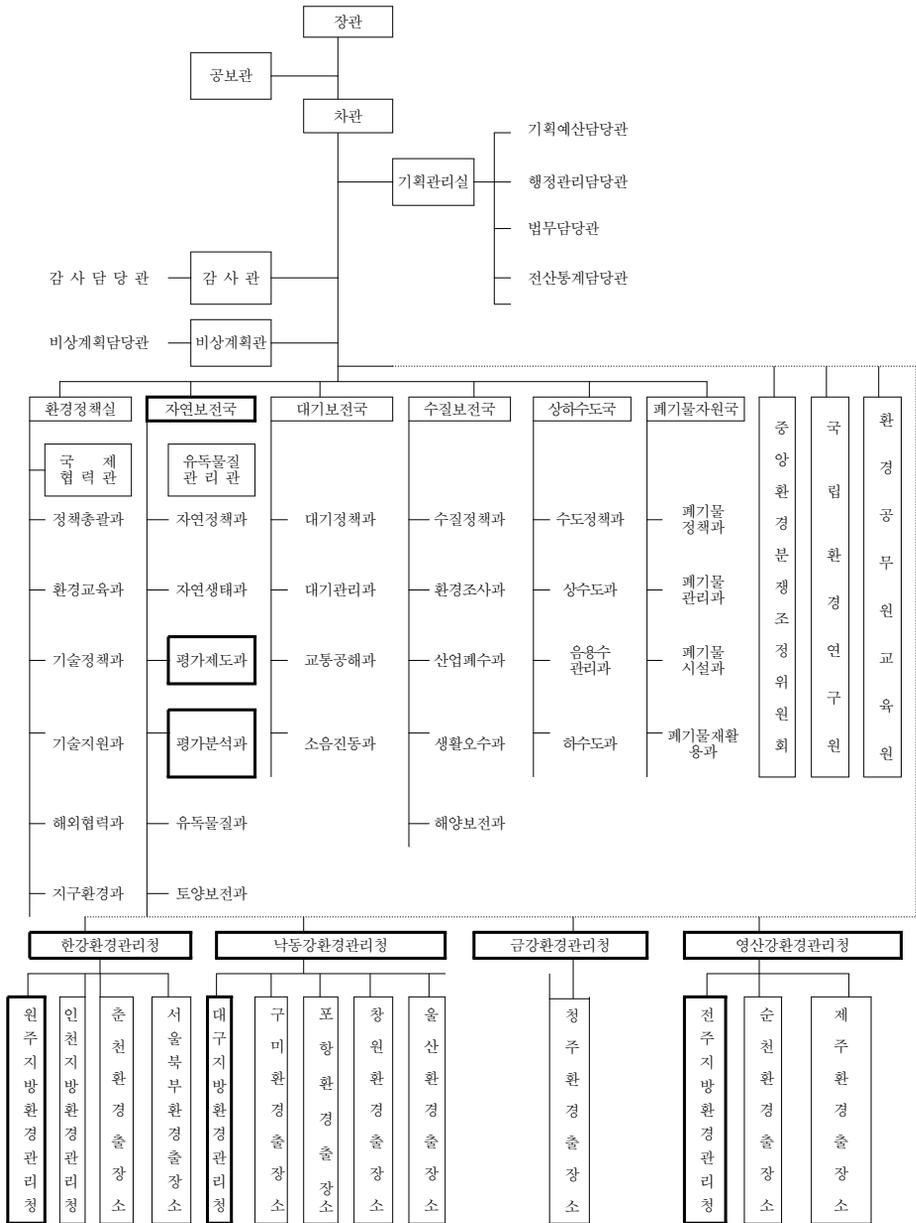
18) 이 외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단조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19) 협의내용의 관리와 관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평가대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증지 요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검토 결과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평가서의 검토·보완 등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
-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자료의 제출 요구 및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등임.

토관련 업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기관으로 이양될 것이다.

이 외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책적·기술적 자문과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쟁점사항이 있을시 사업자, 대행자, 협의기관, 검토기관이 함께 중대한 사업계획의 조성여부를 검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III-1> 환경부 조직기구표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 2.2 특별환경행정기구(환경관리청, 지방환경관리청)의 기능

환경관리청(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원주, 대구, 전주)의 담당기능은 주무부서인 환경부 소관업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된 것으로 환경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있다. 지방환경관리청은 직제상 환경관리청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환경관리청은 환경평가과, 지방환경관리청은 계획과가 담당하고 있다.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 및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① 평가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청문,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 ③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 운영, ④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⑤ 대상사업관련자료 등의 제출요청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⑥ 재협의를 관한 권한, ⑦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통보에 관한 권한, ⑧ 사업착공내용 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⑨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⑩ 승인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⑪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⑫ 협의내용의 승인기관의 장 등에 대한 통보 및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수리, ⑬ 대상사업에 관하여 협의 및 사업계획 등의 조정 또는 보완, ⑭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한 검토, ⑮ 이 외 국토이용계획 및 해역이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업무 및 야생동식물보호 등 각종 자연환경보전업무와 먹는물 환경영향조사서 심의기능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지방환경관리청의 경우, 환경관리청의 환경평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기획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sup>20)</sup>

20) 평가법개정안에 의하여 환경기술개발원이 평가서 검토기능을 갖게 되

〈표Ⅲ-1〉 년도별 환경관리청 협의 실시 건수의 분석(1990-199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계
원주지방환경관리청	10	7	11	13	11	25	77
대구지방환경관리청	17	12	21	19	12	18	99
전주지방환경관리청	-	-	-	-	-	1	1
한강환경관리청	36	34	27	43	22	49	211
금강환경관리청	17	17	12	20	17	28	111
낙동강환경관리청	27	35	26	22	17	22	149
영산강환경관리청	24	23	19	26	20	31	143
계	131	128	116	143	99	174	791

자료: 환경부, 내부자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관리(이행여부조사, 확인) 현황 '94-'95」 1996 에서 정리.

### 2.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 분석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환경영향평가업무는 주로 관리업무로서 주민참여제도의 이행시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①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장소의 결정(시행령 제4조 제3항), ②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시기 및 방법의 공고(령 제4조 제4항), ③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통보(령 제5조 제1항), ④ 통보된 의견의 사업자에게 통지(령 제5조 제2항), ⑤ 설명회개최에 대한 공공사항의 평가서초안 공고시 포함요청 수리(령 제6조 제2항), ⑥ 공청회 개최의 협의(령 제7조 제2항), ⑦ 공술신청서의 제출 수리(령 제7조 제3항), ⑧ 제출된 신청서의 사업자에게 통보(령 제7조 제3항), ⑨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의 조정 협의(령 제7조 제4항), ⑩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보수리(령 제7조 제5항) 등의 기능이다.

면, 환경부의 평가분석과, 각 (지방)환경관리청 및 출장소 등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가 조정될 것으로 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실시주체가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표Ⅲ-2>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공단건설, 도시개발, 도로건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요청하고 있으며, 그 건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Ⅲ-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내용 및 건수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총 협의건수		212(100)	210(100)	127(100)	149(100)	115(100)	161(100)
지방자치단체	소 계	74(34.9)	62(29.5)	58(45.7)	60(40.3)	41(35.7)	58(36.0)
	공단조성	21	16	21	4	9	9
	관광지	4	8	6	6	3	12
	도로건설	5	1	1	11	7	9
	도시개발	27	19	8	12	9	9
	매립·개간	7	8	1	2	1	1
	산지개발	0	0	0	1	1	0
	철도건설	2	3	0	2	0	1
	하천·수자원	1	2	4	2	2	3
	항만건설	0	0	0	1	0	0
환경시설	7	5	17	19	9	14	
기 타	159(65.1)	148(71.5)	69(54.3)	89(59.7)	74(64.3)	103(64.0)	

주 : ( )은 비율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 「'90-'95 환경영향평가 협의현황」, 환경부 「환경백서」 1996년, 376면에서 정리

###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3.1 제도상의 문제점

##### 3.1.1 기능배분의 중앙집권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분담은 중앙집권적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 조정 및 관리기능이 국가, 즉 환경부 주도하에 수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시에 관련되는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에게 적극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평가제도에 대한 소극성을 갖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21)</sup>

##### 3.1.2 기능의 편중성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중앙정부의 위임집행업무에 편중되어 있어서, 기능의 자율성 및 자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축적 실시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2 운영상의 문제점

##### 3.2.1 특별지방행정기구와의 업무분담 비효율성

관리권역별로 환경관리청이 환경영향평가 위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임업무 및 기타 환경지도·단속 등의 업무가 과다하며, 청별의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평가관련 업무조정이 비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21) M. Storksdieck, K. Otto-Zimmermann, 전게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로부터 직접적인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또한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 환경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특별행정기구인 환경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업에 대한 협의는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이 담당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는 상당히 높은 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미이행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표Ⅲ-3).

〈표Ⅲ-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율

구분	1994			1995			1996(1,2분기)		
	사업 시행 자	승인 기관	미이 행율 (%)*	사업 시행 자	승인 기관	미이 행율 (%)*	사업 시행 자	승인 기관	미이 행율 (%)*
공공기관(소계)	200	224	85.7	297	411	74.1	155	232	60.2
-지방자치단체	111	101	45.9	154	185	34.2	59	120	22.3
-기 타	89	123	39.8	143	226	39.9	96	112	37.9
민간기관	43	-	14.2	114	-	25.9	81	-	39.8
총 계	243	224	60.9	411	411	46.9	236	232	43.6

주 : \* 미이행율(%) = 사업시행자별 미이행사업수 / 총미이행사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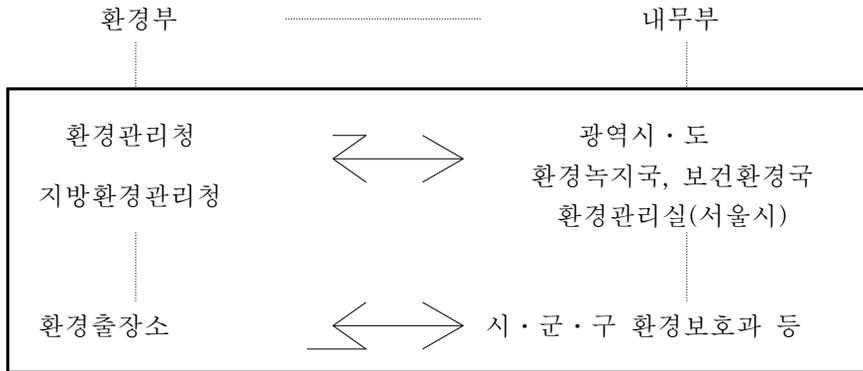
미이행율 총계 = 총미이행사업수 / 총사업수

자료 : 환경부 내부자료, 1996

### 3.2.2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구의 미비

환경행정기구와 환경영향평가기능의 수행관계를 포함한 지방환경 행정체계는 <그림 III-2>와 같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환경영향평가행정은 환경관리청(지방)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녹지국과 보사환경국, 환경관리실(서울시) 등이 수행하고 있다. 반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는 환경보호과를 두고 있다. 환경관리청의 업무는 환경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나, 환경관리실 및 환경녹지국 등은 독립적 기능수행 단위로서 환경부로 부터 간접적인 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III-2>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근 기존의 보사환경국을 폐지하고 행정(1)부 시장 관할하에 「환경관리실」을 설치하였고, 그 아래에 환경기획관과 청소기획관을 설치하였으며, 7개 課와 28개 係를 설치하고 있다 (표III-4).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관련업무는 하수국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둔다. 이와 같이 환경관련 업무를 세분화 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는 계를 따로 두지 않고 환경관리계에서 이행하고 있다. 환경관리계는 자연환경보호업무, 환경관리기금 관련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등을 이행하고 있다.

<표III-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조직

단체명		환경영향 평가 관련 업무조직	인력수			기 타 업 무
			과	계	담당	
광 역 자 치 단 체	서울 특별시	환경계획과 환경보호계	21	5	1	· 환경개선부담금 · 자연환경보호업무 · 환경관리기금 관련업무
	부산 광역시	환경보호과 자연보호계	27	4	1	· 자연정화운동 · 국토대청결운동 · 행락질서 관련업무
	대구 광역시	환경정책 담당관실 환경보호계	15	4	1	· 지방의제21 추진 · 지역환경기준설정 및 특별배출허용기준 · 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환경산업유치지원 · 환경과학연구지원 · 환경영향평가사항 ·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수에 관한 사항 · 환경보전 대 시민홍보 · 환경정보의 수집 분석 · 환경재활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
	인천 광역시	환경보호과 공해관리계	33	5	1	· 자연생태계 관련업무(야생동식물 보호) · 토양보호 관련업무 · 국토대청결운동 · 환경영향평가 대상외 사업에 대한 타 부서간의 시설협의 · 각종 환경 월보 취합업무
	광주 광역시	환경관리과 환경기획계	20	5	1	·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업무 · 환경개선 특별회계 관련사항 · 환경분쟁조정 ·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 공익근무요원 관리사항
	대전 광역시	환경정책과 환경협력계	21	4	1	· 환경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자연보호운동 ·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 항 · 환경기술 지원관계에 관한 사항
	강 원 도	환경정책과 환경평가계	16	3	3 (계장 포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지정된 관련사항 · 강원도 특별법에 지정된 개발사업 (동계아시아경기대회 특별법)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 기 도	환경보전과 생태보전계	30	4	1	· 토양오염관련업무 · 지하수보호 및 관리업무 · 지구환경보전업무(대외적 기온변화협약 검토 등) · 자연환경보전업무

<계속>

단체명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조직	인력수			기타업무
			과	계	담당	
광역자치단체	충청북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계	17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음, 대기측정망</li> <li>· 환경성 검토</li> <li>· 국토이용계획변경협의</li> <li>· 개별 공장입지 지정협의</li> <li>· 지하생활공간 오염도 측정</li> </ul>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계	16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추진</li> <li>· 환경공무원 인사관리</li> <li>· 소음(건설, 교통, 생활), 진동(건설, 교통, 생활)규제지역 지정관리</li> <li>·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li> <li>·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및 보전협회관리</li> <li>· 지구환경에 관한 사항</li> <li>· 환경보전 홍보교육</li> <li>· 환경공무원 관리인 교육 및 관리</li> <li>·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li> <li>· 환경개선 부담금 관리</li> <li>· 그 외 과내의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ul>
	전라북도	환경관리과 환경기획계	14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추진</li> <li>· 자연환경보전종합계획기수립추진</li> <li>·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수 업무</li> <li>·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li> <li>· 환경분야 주무과에 기획관련업무</li> </ul>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	22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관한 사무</li> <li>· 환경정책과 시책업무추진</li> <li>· 국정감사 및 지방의회에 관한 사무</li> <li>· 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무</li> <li>· 환경관련공무원 인력관리</li> <li>· 환경관련단체 등록 및 지원육성</li> <li>·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 지방의제21 추진에 관한 사항</li> <li>· 환경관련 홍보 및 세계환경의 날 행사 추진</li> <li>· 환경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li> <li>· 환경관련 공무원 교육</li> <li>· 환경개선부담법 관련 업무</li> <li>·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업무</li> <li>· 환경기준유지를 위한 환경성 검토</li> <li>· 공공시설 입지 국토이용계획변경 검토</li> </ul>

<계속>

단체명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조직	인력수			기 타 업 무
			과	계	담당	
광역 자치 단체	경상 북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계	20	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li> <li>· 환경개선부담금</li> </ul>
	경상 남도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계	16	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li> <li>· 환경개선 중기 종합계획 운영</li> <li>· 국, 과 주요업무 계획작성 및 심사분석</li> <li>· 지방환경보전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li> <li>· 환경분쟁조정위원 위촉 및 운영</li> <li>· 의회 예산관련 업무</li> <li>· 대통령 공약, 도지사 지시사항 업무</li> <li>· 토양보전대책 관련업무</li> <li>· 환경보전 홍보</li> <li>· 환경개선 부담금 관련업무</li> </ul>
	제주도	환경관리과 환경평가계	15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조정위원회 운영</li> <li>·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측정망 운영</li> <li>· 토양유발시설 관리</li> <li>· 유독물질관리</li> <li>·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li> <li>· 각종 환경성 검토</li> </ul>

대부분의 광역시 경우, 환경녹지국 환경과에서 환경관리 업무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와 환경국 환경정책과 환경협력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道는 환경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환경정책과에 「환경평가계」를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시에는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를 설치 운영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 구단위에서는 환경과 (관리계, 지도계, 생활공해계) 등을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 작성 이후 주민참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Ⅲ-5).

〈표Ⅲ-5〉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조직

단체명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조직	인력수			기 타 업 무
		과	계	담당	
기 초 지 방 자 치 단 체	수원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	19	4	1	· 자연보전법에 의한 업무 · 환경개선부담금 · 자연환경조사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업무
	김포군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	12	4	1	·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 환경개선부담금 · 자연환경보전 · 사회진흥업무(국토대청결운동) · 유독물관리 · 토양오염 · 지하수 · 항공기 소음대책 등 이상 관련업무
	강남 구청	18			· 일반환경관련업무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기구의 분석 결과,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및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부서를 국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Ⅳ장 참조).

### 3.2.3 환경영향평가 인력 및 전문성 미비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미비하고, 전문성을 띤 인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서울시의 경우, 환경보전과 환경관리계에서 2명의 인원이 평가관련 업무를 기타 다른 환경보전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 강원도는 환경평가계를 설치하여 계장을 포함한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표Ⅲ-4).

또한 지방공무원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성이 중앙공무원에 비하여 미비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환경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대부분이 환경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주일 정도의 환경관련 직무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전체의 47.2%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Ⅲ-6). 또한 환경업무 종사경력이 2년이 채 못되는 인원이 59.8%에 달하고 있다.<sup>22)</sup>

〈표Ⅲ-6〉 중앙과 지방 환경공무원 교육기간 분석

구 분	1주 이하	2-3주	4-6주	7주 이상	합 계
중앙환경공무원	12	45	26	13	96
비 율	12.5	46.9	27.1	13.5	100.0
지방환경공무원	60	32	20	15	127
비 율	47.2	25.2	15.7	11.8	100.0
합 계	72	77	46	28	223
비 율	32.3	34.5	12.6	12.6	100.0

자료: 김형윤,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1993.

### 3.2.4 전문인력의 지역적 편중성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개발사업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가 환경전문인력의 미확보 등으

22) 김형윤,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 1993

로 평가서 작성 능력이 부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대행할 수 있다.

평가대행업체 지정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위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표Ⅲ-7)

<표Ⅲ-7>에서 나타나듯이 대행기관을 지자체별로 분류해보면, 서울이 49개로 가장 많고, 경기 14개, 부산 4개, 그 외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1개 내지 2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인천·충북·충남은 지정된 대행기관이 없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대행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전문인력의 분포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전문인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지역의 전문가가 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비용이 더욱 많이 들고, 지역전문가보다 시간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역전문가가 타지역의 전문가보다 지역의 발전상태 및 현황, 환경영향의 예측 등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Ⅲ-7>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현황

시 도 별	계	국·공립연구기관	대 학 부 설 환경관련연구소	기타용역업체
1995년	87	2	15	70
서울	49	1	-	48
부산	4	-	3	1
대구	2	-	-	2
인천	-	-	-	-
광주	2	-	2	-
대전	4	-	2	2
경기	14	1	-	13
강원	2	-	1	1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2	-	2	-
전남	2	-	-	2
경북	3	-	2	1
경남	2	-	2	-
제주도	1	-	1	-

자료 : 환경부, 「환경연감」, 1995 및 내부자료 1995. 11.

#### 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 4.1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유형 및 환경문제 증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또는 사업의 승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표Ⅲ-8).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등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온천법에 의거하여 온천개발사업을 시행

##### 〈표Ⅲ-8〉 지방자치단체 주요 개발사업 내용

관계법	내용	시행	승인
지역균형개발촉진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지역개발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민간개발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복합단지개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건설교통부장관
		민간개발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국가	건설교통부장관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경우는 해운항만청장)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농공단지개발사업	농업진흥청	시장, 군수, 도지사
	산업단지개발사업		건설부장관
자연공원법	공원사업	공원관리청	
		비공원관리청	허가:공원관리청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사업	시장, 군수	인가:건설부장관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시장, 군수	인가:건설부장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지방자치단체 국가	건설부장관
도시재개발법	도심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조합	시장, 군수, 구청장
	주택재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
	공장재개발사업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제3개발자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을위한시초치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설립된 공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아파트지구개발사업	토지소유자, 조합	승인:건설부장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주택건설사업		승인: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대지조성사업		승인: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승인:건설부장관

<계속>

관계법	내용	시행	승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용지 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용지지정 : 통산산업부장관 협의 : 건설교통부장관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교통부장관	협의 : 관계부처의 장
	권역계획의 수립	당해지역의 도지사	조정 : 교통부장관 협의 : 관계부처의 장
	관광지의 지정	교통부장관	협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
	조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 한국관광공사, 민간개발자	교통부장관 교통부장관
온천법	온천지구의 지정	시·도지사	
		관할시장·군수	시·도지사

자료 : 각 관련법에서 정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승인사업들로는 농공단지개발사업, 주택 및 도심재개발사업, 온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그리고 개별 건축물건설사업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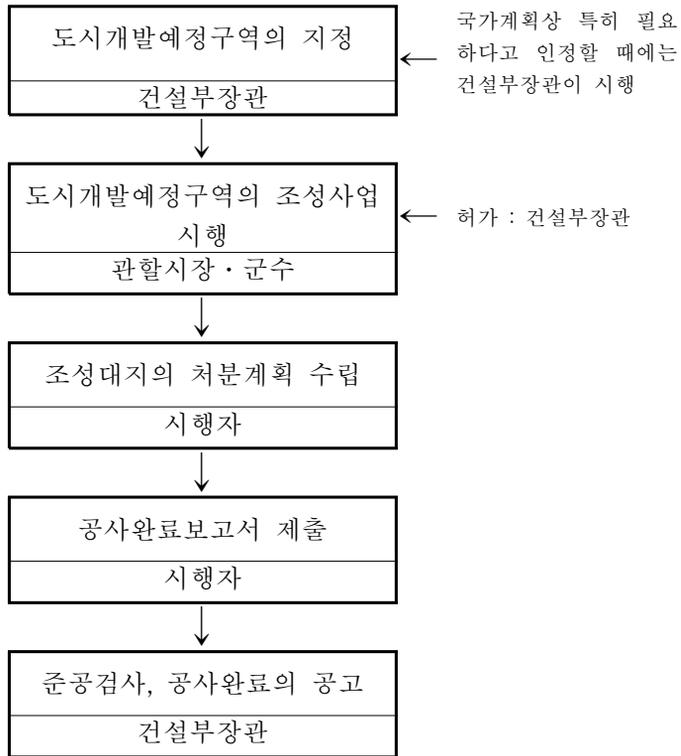
위와 같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또는 승인하는 주요 개발사업별 시행절차를 살펴 보면 <그림Ⅲ-3>에서 <그림Ⅲ-6>과 같다. 즉,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나, 평가대상 규모이하의 사업은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표 Ⅲ-9).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성을 평가하는 절차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23) 최근 서울시가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5개지구에 허가를 한데 이어 우려되는 교통체증, 폐건축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감소하기 위하여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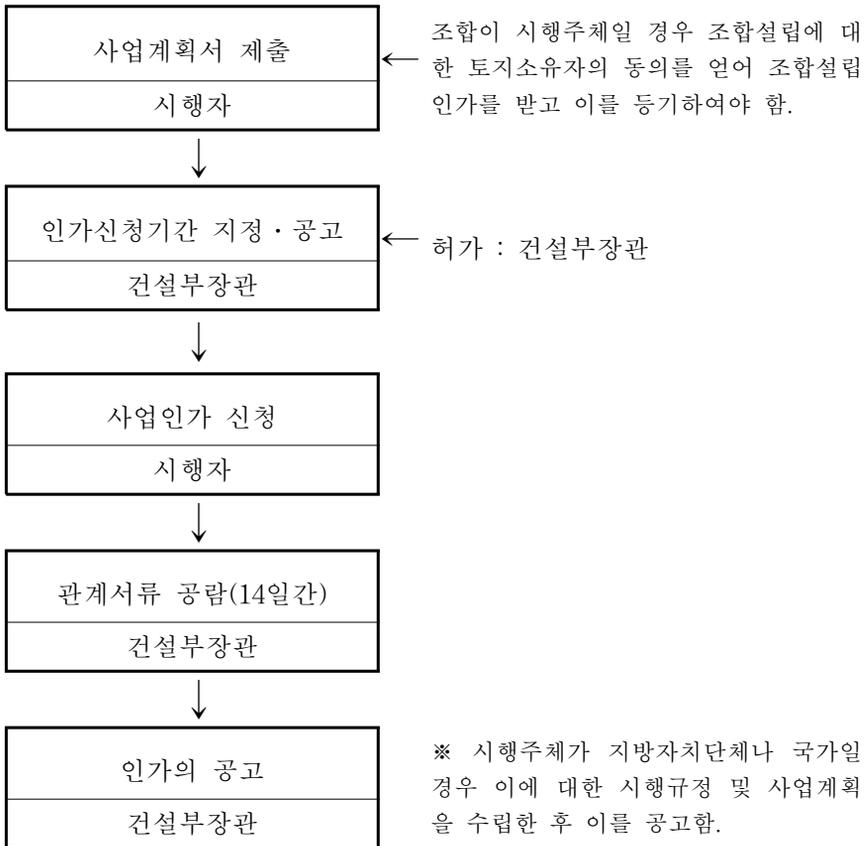
〈표 III-9〉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대상 분야	관련 법규	대상사업 범위
도시의 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	-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면적 30만㎡ 이상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중 면적 25만㎡ 이상 -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 30만㎡ 이상 -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 30만㎡ 이상 - 도시재개발 면적 30만㎡ 이상 - 주택지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30만㎡ 이상 - 공업용지조성사업 15만㎡ 이상
관광단지의 개발	관광진흥법 온천법	-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30만㎡ 이상 - 온천개발계획의 면적 30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 면적 30만㎡ 이상
폐기물 및 분뇨처리 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 분뇨처리시설 용량 100kl/일 이상 -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330만㎡ 이상 - 특정폐기물 매립시설 조성면적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 25만㎡ 이상 - 소각처리능력 100t/일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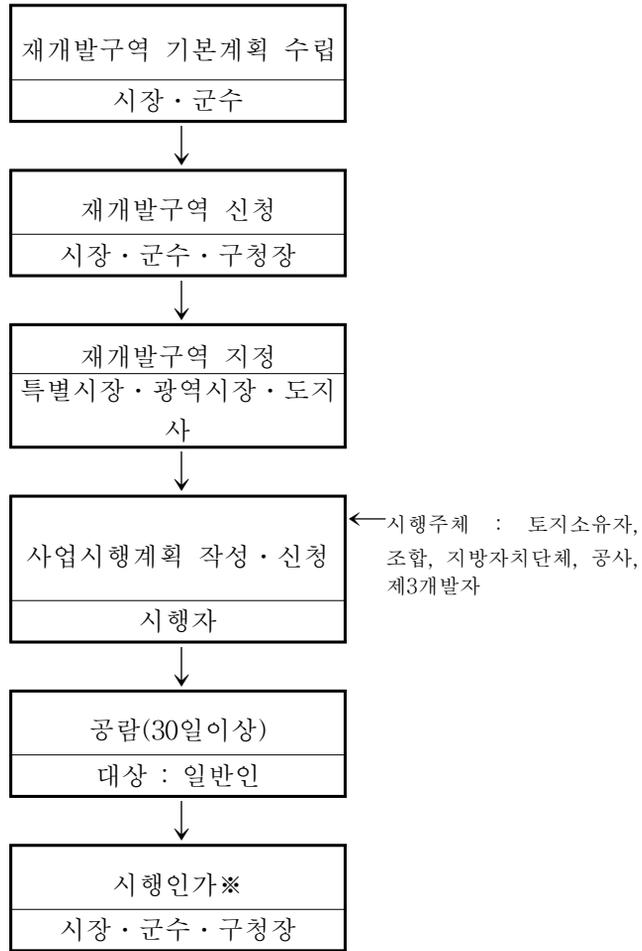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995 에서 정리



<그림III-3>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실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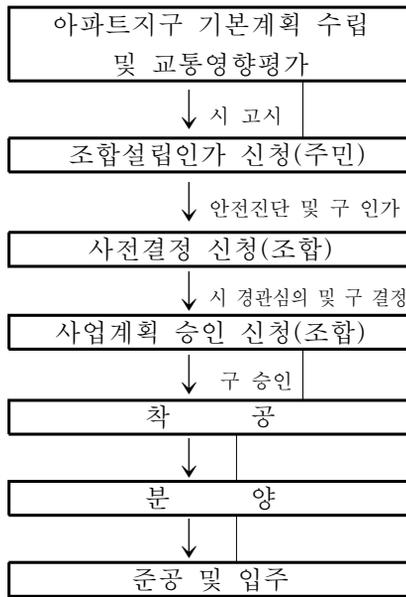


〈그림III-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절차



〈그림Ⅲ-5〉 도시재개발사업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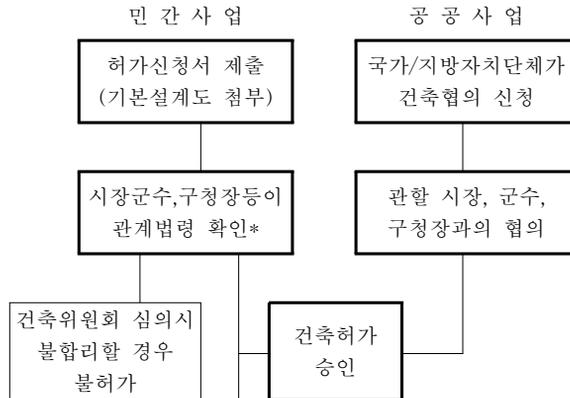
※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시행규정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공사일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음.



〈그림III-6〉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실시절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허가하고 있는 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 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그림 III-7).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대부분 주변 조경물 등의 경관미에 치중하고 있어, 이는 환경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라고 볼 수 없다.



<그림III-7> 건축허가 절차도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음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문제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의한 피해, 교통혼잡 등의 문제, Biotop 등 지역 생물군 및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의 파괴, 지역적 안개일수의 증가 등 미시기후의 변화 및 이로 인한 인체의 유해 유발, 공기순환 및 흐름의 방해, 지역 유적 및 문화재의 손실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별 환경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 수질, 동식물, 소음·진동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기의 경우, 아황산가스·오존 등은 환경기준치보다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표III-10). 폐수배출량 및 방류량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표III-11), 또한 도로변 소음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표Ⅲ-12).

이러한 환경문제는 지역 환경보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Ⅲ-10〉 6대도시 대기오염도 (1993, 1994)

	1993					1994				
	SO <sub>2</sub> (ppm)	TSP ( $\mu\text{g m}^{-3}$ )	O <sub>3</sub> (ppm)	NO <sub>2</sub> (ppm)	CO (ppm)	SO <sub>2</sub> (ppm)	TSP ( $\mu\text{g m}^{-3}$ )	O <sub>3</sub> (ppm)	NO <sub>2</sub> (ppm)	CO (ppm)
기준치	0.03	150	0.12	0.05	9	0.03	150	0.12	0.05	9
서울	0.023	88	0.013	0.032	1.5	0.019	78	0.014	0.032	1.5
부산	0.028	96	0.014	0.025	1.3	0.023	97	0.014	0.024	1.6
대구	0.035	105	0.013	0.024	1.2	0.038	3	0.015	0.023	1.1
인천	0.021	100	0.012	0.030	1.8	0.022	93	0.014	0.029	1.6
광주	0.014	75	0.015	0.017	1.3	0.013	64	0.015	0.022	1.2
대전	0.020	53	0.011	0.014	1.2	0.021	58	0.014	0.019	1.4

주 : 1) 연간평균치

2) 8시간평균치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5

〈표Ⅲ-11〉 6대도시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1993, 1994)

(단위 : 천m<sup>3</sup>/일)

	1993			1994		
	조사 사업장수	폐수 발생량	폐수 방류량	조사 사업장수	폐수 발생량	폐수 방류량
서울	2,575	113	109	3,236	169	110
부산	1,787	99	87	2,114	101	89
대구	1,486	165	140	1,874	175	160
인천	891	866	49	1,631	888	67
광주	575	20	19	765	25	22
대전	580	59	42	736	65	48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3, 1994.

〈표Ⅲ-12〉 도로변지역 소음실태(1995)

(단위 : Leq dB(A))

지 역 구 분	적용대상 지역	환경기준		환 경 소 음 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원주		춘천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낮	밤
도로변 지 역	주거지역	65	55	71	65	72	66	69	60	70	59	72	68	63	58	68	63
	상업지역	70	60	76	70	77	73	70	62	71	62	72	69	66	60	71	65
	공업지역	75	70	-	-	75	70	72	64	74	62	71	67	64	58	67	62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1995

#### 4.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개발사업유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환경성을 고려하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환경현황, 환경행정체계 및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향후 21세기의 지방화·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운용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두 가지 양상으로 대두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 인식의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갖는 한계는 내재적 한계와 외재적 한계로 구분할 수 있다. 내재적 한계란 환경영향평가 기법자체가 갖는 한계를 의미하며, 외재적 한계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여건이 갖는 한계를 의미한다.

내재적 한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였을 경우 제도의 실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평가제도 자체가 갖는 한계성은 첫째,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영향의 예측이 어려우며, 다양한 전문성을 응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외재적 한계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 관련전문가가 부족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각 지자체별 대행전문기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성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도

입할 경우에 과연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을 것인가는 중요한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선진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활발하지 않은 상태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를 도입하여야 하는가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는 제Ⅱ장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한 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실시하는 모든 크고 작은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술한바와 같이, 지자제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는 개발정책의 이행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통합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 또한 미흡하다. 이와 같은 개발정책을 조정·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많은 개발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남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지역환경문제의 심각성은 보다 광범위하게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정책에 대한 환경성 검토의 수단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성을 보다 감안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제IV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 1. 외국 사례분석 의의 및 사례의 선정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외국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독일, 일본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사례국가의 선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개념이 독일, 일본 등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실시국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sup>24)</sup>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사례분석 목적은 외국의 경우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효과 분석을 통하여 그 모형을 비교분석하고자 함이다.<sup>21)</sup> 모형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모형정립을 위하여 활용하는데에 본 사례분석의 의의가 있다.

그 비교분석을 위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②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분담, ③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대상, ④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절차, ⑤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 주체(검토 및 조정, 관리, 작성), ⑥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항목, ⑦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을 위한 논의실태 등이다.

24) 독일·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운용하였으나, 미국은 중앙정부에서 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운용하였다.

21) 이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중앙정부(또는 연방정부)의 경우처럼, 각기 다른 모형으로 발달되어 있다.

## 2. 독일의 사례

### 2.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972년 스톡홀름의 인간환경회의 이후, 구 서독 연방정부와 연방주(Bund und Länder)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 연방정부는 연방내무부에서 준비한 ‘연방환경영향평가법안’에 평가실시대상을 연방주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도 포함하도록 하였다.<sup>22)</sup> 동 환경영향평가법을 지방자치단체와 연관시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기타 연방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실패하였으나 연방수상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추진시켰다.

1975년 연방정부의 공공대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연방정부의 각료회의에서 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 교통 및 국토정비 등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았기 때문에 연방정부 및 연방내무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추진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의 제28조 제2항은 “지자체는 모든 지역 공동사회업무를 스스로 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7년에 개정된 「연방건설법(Bundesbaugesetz)」은 “건축주체자로서 지자체에게 건축실시계획에 있어서 야기되는 환경성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의무화” 하였다.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의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

22) 1986년 연방환경부(공식명칭: 연방 자연·환경보호·원자력안전부)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환경보전 업무를 연방내무부가 관할하였다. 1970년대 당시 연방내무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조정·통제기능이 아닌, 단지 환경정보구축 기능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가 행정기관내 ‘생태적 자가조정적’ 기능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현재 2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에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주요기관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환경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고 인식한데 있다.

한편, 1985년에 발표된 EC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EC국가는 지침이 발효된 이후 3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일은 이보다 2년이나 늦은 1990년에 「연방환경영향평가법」을 단일법으로 입법화하여 운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늦게 제정된 이유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는 이미 개발관련 개별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개발주체 및 계획가들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 2.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체계 및 기능

독일은 세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를 가진다. 즉 연방차원, 연방주차원, 지방자치단체(Commune)차원이다.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연방주가 각 집행을 위한 관련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것을 명문화하고 각 개발관련 개별법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을 규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주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조정 등의 기능은 갖지 않으며, 단지 제도적 시행을 위한 방향 및 목적, 내용 등을 규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연방주는 「연방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 집행(실시)을 위한 법규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연방주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들로는 현재 16개 연방주들 중 Baden Württemberg, Bayern, Berlin, Hamburg, Hessen,

Nordrhein-Westfalen, Niedersachsen, Saarland, Sachsen, Schleswig-Holstein 등 10개 연방주이다. 이들 연방주에서 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실시관련 규정 등은 각기 다른 모형으로 정립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최하위 주체이다.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연방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시에 환경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는 독립적으로 각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쌍방간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연방정부는 주정부에게, 주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 2.3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평가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항상 요구하는 사업의 목록을 제시하는 대상사업목록방식(Positive lists)을 채택하여 16개 분야의 사업종류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업종류별로 각각 단위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다. 즉, 27개의 산업설비(특히 화석연료발전소, 화학·석유화학시설, 제련소, 주조소, 용광로 시설 등이 포함), 핵발전소 및 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광산, 공항 및 시가철도, 토지재분배사업 등이 있다.

동법에서는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 규정에 의거하여 계획, 프로그램, 행정규칙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주는 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보다 3개를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연방주 도로의 건설, 연방주 철도, 지하수 이용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개발사업, 건축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 건설이행계획, 그리고 공공기관의 구입물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IV-1>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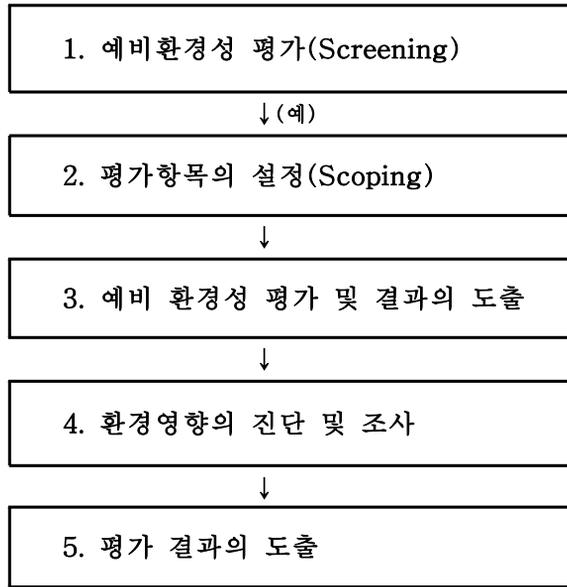
**<표IV-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대상 (독일)**

• 조레, 경찰령	• 사용규정
• 인·허가승인 관련사업	• 행정규칙
• 계약	• 물자구입
• 투자, 지원금	• 예산전적(평가)
• 토지이용계획	• 개별법에 의한 계획확정
• 공식적 계획절차의 참가	• 비공식적 계획 및 프로그램
• 경영방식의 결정	

자료: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연구, 1993, 55면.

## 2.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연방 및 주차원의 환경영향평가는 실시 절차상의 차이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크게 두 단계(예비조사 및 환경영향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5단계의 절차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IV-1). 연방 및 주정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비교할 경우, 나타나는 차이점은 모든 크고 작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환경성평가(Screening)를 실시하여 사업의 규모보다는 환경영향의 대소에 역점을 두고 부정적 환경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림IV-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료: K. Otto-Zimmermann(edt.),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in der Kommunalverwaltung*, 1990.

## 2.5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최종평가서의 작성주체는 공공사업 주관기관이며, 조정 및 실시주체 또한 주관기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 기능을 갖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경청이 검토결과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환경성 고려는 지자체의 전문계획(Fachpläne) 기관에서 실시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기법개발과 절차의 실시를 위한 기관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환경청(Umweltamt)」 또는 유사

관련기관을 설치하였는데, 일부 환경영향평가의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표IV-2). 뷔스바덴市の 경우, 市환경청내에 「環境影響評價局」을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라고 볼 수 있다.<sup>23)</sup>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위해 행정기관내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팀(Expert Round)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건축계획과 관련되는 구청, 관련 기관 등의 담당자들로 구성된다.

〈표IV-2〉 환경영향평가 실시주체 분석

지자체명	조정 및 책임기관	지자체명	조정 및 책임기관
아헨	환경청	뮌헨	개발주관기관, 환경청
에어랑겐	개발주관기관	뷔스바덴	환경청
칼스루헤	개발주관기관	도르트문트	예비환경성: 환경청 도시계획청: 주환경성 평가
켈른	개발주관기관, 환경청	본	개발주관기관(단, 환경청은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2.6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의 평가항목은 환경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인간 및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② 동·식물, ③ 토양, ④ 수질, ⑤ 대기, ⑥ 기후, ⑦ 자연경관, ⑧ 각 환경매체간의 상호작용, ⑨ 문화재 및 그 밖의 문화유산 등이다.

23) 현재 뷔스바덴은 환경영향평가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는 모범적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 평가항목은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의 범위내에서 적용시키고 있는데,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좁은 범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평가항목 및 범위가 미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평가항목의 설정단계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항목들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영향 평가항목의 범위는 크게 ① 토양, ② 수질, ③ 기후, ④ 대기, ⑤ 동·식물, ⑥ 자연과 경관, ⑦ 소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2.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실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역환경보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연방정부 및 연방주 차원에서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 계획수립 등 지자체의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환경성을 고려하고 있다.

독일통일 이후 독일에 편입된 구 동독지역의 5개 신연방주 및 기초자치단체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통일이후 물밀듯이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에 대한 주요한 제재 수단으로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논의는 활용기법의 개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도입되고 있지 않는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2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 인식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함께 향상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는 본 연구자가 자료조사를 위한 출장기간(1996. 6. 28 - 7. 4)중 독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담당자들과의 직접 면담에서 확인된 것이다.

### 3. 일본의 사례분석

#### 3.1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일본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추진은 1972년 6월 내각에서 결정한 『각종 공공사업에 관련된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각의 요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그 제도화가 처음으로 검토되었다.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는 법안이 처음 1976년 환경청에 의해 제안되어 타 정부기관들과 논의되었으며 1981년 이 법안이 2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무효화되었다. 반면 내각은 비강제성을 띤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인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하여』를 1984년에 수용하였다. 이후 여러 정부부처는 각 관련 개별법의 개발시에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표Ⅳ-3).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가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1993년 일본은 환경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법의 제20조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가와사키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1970년대 중반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또는 요강을 제정·도입하였다.<sup>25)</sup>

---

25) 후쿠오카(1973), 가와사키시(1976), 홋카이도(1978), 도쿄(1980), 가나가와(1980)

〈표IV-3〉 일본의 환경영향평가 연혁 요약

연 도	경 위	내 용
昭和 47. 6. 6	각의 요해	- 「각중공공사업등에 관한 환경보전대책에 대하여」
昭和 54. 4.10	중앙공해대책 심의회에 자문	- 환경청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자문
昭和 56. 4.28	환경영향평가법안의 각의결정 국회 제출(제94회 국회)	-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방향에 대하여」 답신
昭和 57. 5-8	법안심의 (제96회 국회)	
昭和 58. 4	법안심의 (제98회 국회)	- 중의원환경위원회에 의하여 법안에 대해서 3일간 각당 1회 질의
昭和 58.11.28	법안폐안 됨 (제100회 국회)	- 중의원환경위원회에 의하여 법안에 대해서 참고인의 의견청취 또는 질의
昭和 59. 8.28	각의결정	-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하여」의 각의결정
11.21	공통적사항 결정	- 환경영향평가실시추진회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요강에 기인한 절차등에 필요한 공통적 사항」을 결정
11.27	기본적사항 결정	- 환경청장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 예측 및 평가목적의 기본적 사항」을 결정
昭和 60. 1.14	상당수속조례등의 지침	- 환경청장관 「상당절차등(경과조치)에 관한 조례등」을 지정
3.29-5.5	대상사업 규모결정	- 주무대신은 환경청장관과 협의하고 대상 사업, 규모 등을 지정
4. 1-12.12	기본통달 등	- 국가 행정기관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 실시요강에 기인된 것, 사업자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
昭和 62.12.1-12.22	지침시행	- 주무대신은 환경청장관과 협의하고, 대상 사업종류마다 지침을 순차책정, 시행(당면 사업의 상정치 않은 호소개발, 신간선 철도를 제외)

자료: 환경처, 1993.

그중 동경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공해현상의 악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9년 7월 이전에 있던 「공장공해방지조례」, 「소음방지에 관한 조례」 및 「배연방지조례」를 종합 정리함으로써 규제대응을 대폭 확대하고 「동경도 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다음해 1970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사업의 실시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예측, 평가하는 제도의 검토가 시작되었고, 이로써 1972년 5월 환경청 장관은 중앙공해대책심의회에서 ‘공해를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고 광역오염대책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 관련된 공해방지계획은 금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동년 6월에는 각종 공공사업에 관계되는 환경보전대책을 위하여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영향예측, 환경과피의 방지책, 대책안의 비교검토 등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75년 12월에는 ‘중앙공해대책심의회’의 ‘방지계획부회’ 내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문위원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 이것에 기초하여 환경청은 법안작성작업에 대해 관계 각 기관과 조정을 추진하였으며 합의를 얻어 조정작업을 이루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통일적인 이미지로 해석되기 쉬우나, 독일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다양화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반 정도가 지자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 3.2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역할 분담

---

26) J. Glasson, R. Therivel, A. Chadwick, *Introduction to EIA*, 1994.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는 국가로부터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동경도의 경우 환경보전국 환경관리과 환경영향평가계에서 환경영향평가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표IV-4).

〈표IV-4〉 동경도 환경보전국의 조직

Director General (환경보전국장)	
Environmental Management Division	Environmental Planning Office General Affairs Section Guidance and Consultation Section <b>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b> and Investigation Office
Nature Conservation Division	Greenery Promotion Office Conservation Section
Air Quality Protection Division	Planning and Coordination Section Air Pollution Prevention Section Air Pollution Monitoring Section Automotive Pollution Countermeasures Office Noise and Vibration Prevention Section
Water Quality Protection Division	Planning and Coordination Section Water Pollution Prevention Section Water Quality Monitoring Section
Monetary Aid and Guidance Division	Monetary Aid and Relocation Guidance Section High Pressure Gas Regulation Section Explosives and Electricity Regulation Section
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Conducts environmental-protection surveys and research)
Tama Environmental Protection Office	(Promotes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in the Tama area)

자료: 환경처, 『일본의 환경정책 -귀국보고서-』, 1994. 6.

### 3.3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국가환경영향평가대상은 대규모의 사업을 중심으로 11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규모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건수는 연간 70건 정도인데, 평가대상의 50%정도가 공항 및 항만건설이며, 발전소건설 등이 대부분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75건 정도의 협의를 실시하는데, 이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즉, 매립사업(약 25%), 건축물 건설(18%), 도로(13%), 발전소건설(9%), 철도(7%) 등이다.<sup>27)</sup>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대상 범위는 예상되는 개발의 종류와 건수, 행정처리능력, 행정의 이행과정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등이 포함된다.

동경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26개의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하여 고층건축물, 자동차주차장, 모노레일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포괄조항을 만들어 26개의 사업과 동일한 정도의 환경영향을 야기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것에 따라 대상을 정할 수 있다. 한편 가와사끼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지정개발행위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표IV-5>와 같다.

---

27) J.Glasson, Therivel, Chadwick, 전제서, p.274

〈표IV-5〉 가와사끼市 환경영향평가 대상개발행위

지정개발행위	적용제외
(1) 도시계획법 (1968년 법률 제 100호) 제4조 제 1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행위	개발구역면적이 1ha 미만의 것은 제외함.
(2) 매립행위	매립면적이 1ha (공유수면매립법 (大正 10년 법률 제 57호) 제 1조 제 1항에 규정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대상으로는 15ha)미만의 것은 제외
(3) 일단의 주택시설의 건설	일단의 부지면적이 1ha미만의 것 혹은 계획인구 500인 이하 (도시계획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 제1종 주거전용지역 및 제2종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의 것은 제외
(4) 제조업(물품이 가공수리업을 포함), 전기공급업, 가스 공급업 혹은 열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장의 신설	일단의 부지면적이 9,000㎡미만 혹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3,000㎡미만의 것은 제외
(5)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와 관련된 법률 (1970년 법률 제 137호) 제 8조 제 1항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혹은 동법 제 15 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신설	1단지의 부지면적이 9,000㎡미만의 것은 혹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가 3,000㎡미만의 것은 제외
(6) 수도법 (1957년 법률 제 177호) 제3조 제7항에 규정된 수도시설에 있는 정수시설의 신설	
(7) 하수도법 (1958년 법률 제 79호) 제 2조 제 6호에 규정된 종말처리장 신설	
(8) 철도 혹은 그 밖의 레일 신설 및 도로의 증설	
(9) 도로의 신설 및 차선의 증설	차도 4차선 미만의 차도(자동차 등의 교통용으로 공급되는 도로를 제외)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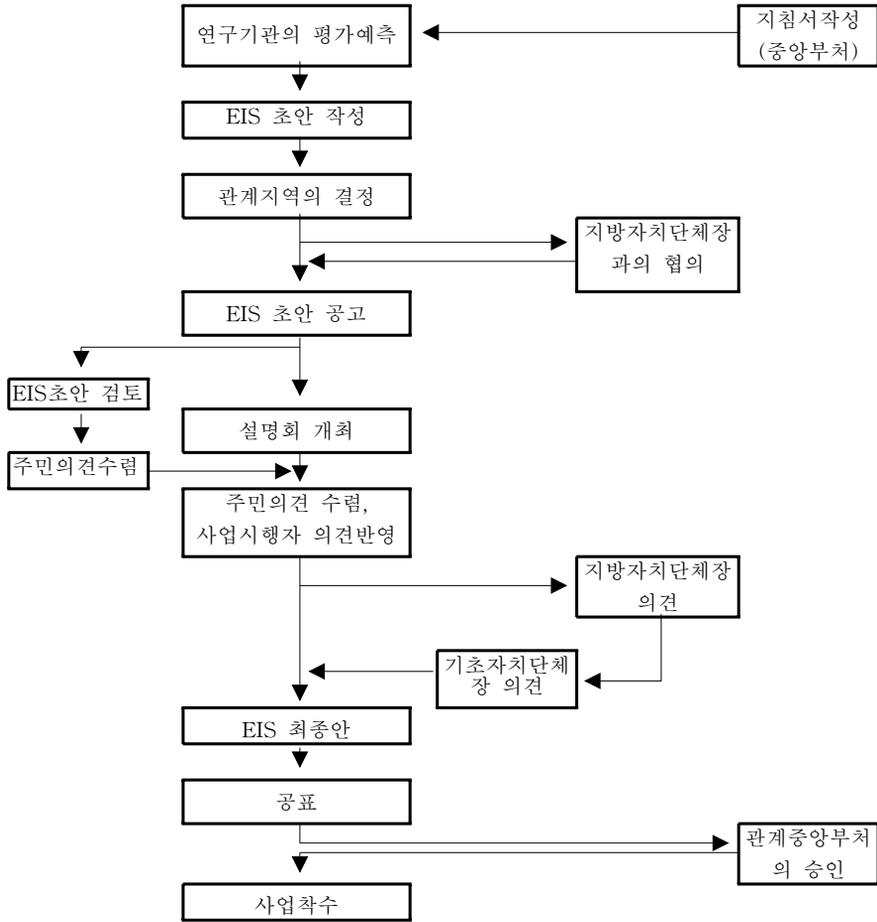
\* 자료 : 松本秀雄, '川崎市における環境アセスメントの経験', 『環境情報科學』, 1982. 11.

### 3.4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동경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업 실시전에 행하는 사전환경영향평가와 공사완료후에 시행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자가 평가서안을 제출하고 지사가 관련 지역을 결정하고, 이의 범위와 평가서안의 개요를 공시한다. 평가서안의 총람, 심사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심의회 의 답문 → 사업자가 설명회 등의 주지 조치를 실시 → 都民, 관련된 區市町村長이 知事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사본을 사업자에게 발송함) → 지사가 공청회 개최(의견의 요지를 사업자에게 발송함) → 사업자가 都民의 의견에 대한 견해서 제출 → 지사가 견해서의 개요를 공시하고, 견해서 총람 → 사업자가 설명회등 주지조치를 취함 → 도민, 관계 區市町村長이 지사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 → 지사가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발송 →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 → 지사는 평가서를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권자에게 발송하고, 인허가에 해당하는 것의 배려를 요청하는 등 이와 같은 흐름대로 추진한다.

사후 조사절차는 인허가 후에 공사착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 수속은 사업자가 사후조사계획서를 제출 → 사업자가 공사중에 조사를 행하고, 사후조사보고서를 제출 → 지사가 보고서의 개요를 공시 → 지사가 내용을 심의함 → 사업자가 공사완료 후의 조사실시, 사후조사 보고서 제출 → 지사가 개요공시 → 지사가 내용을 조사하는 등 이와 같은 순서대로 추진한다. 사후조사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는 것은 지사가 규제권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행할 수 있다.



<그림 IV-2>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흐름도

### 3.5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주체(검토 및 조정, 관리, 작성)

평가서 주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즉 평가서 작성에 있어서는 개발사업자가 행하며 이를 조정·심사하는 주체는 동경도 환경보전

국 심의회이다.

동경도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발췌한 평가서에 대한 심사, 판단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체는 다음과 같다.

평가과정상 평가서안에 대해서 지사는 평가서안에 대한 도민 등의 의견, 사업자 견해서의 기안, 환경보전의 견지에서 평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한다. 평가의 공정성·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식있는 경험자에게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지사의 부속기관으로 이를 설치하고 평가서를 검토하도록 한다.<sup>28)</sup> 이는 우리나라의 검토기능을 갖고 있는 ‘중앙환경보전문위원’내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와 유사하다고 본다.

한편 도내에서 실시되는 대상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이 인접 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할 경우 그 인접현 지사, 지정도시의 시장과 환경영향평가의 수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지사는 평가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답신을 받아들여, 도민 및 관계도시정촌장의 의견을 기안하여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국가 혹은 이에 준하는 법인이 대상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의 수속에 대하여 지사와 국가가 이를 협의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며, 대상사업이 도시계획에 정해진 경우에는 지사는 이 조례 수속을 도시계획결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28) 동경도 환경영향평가서 조례 개정안의 제 35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회’는 학문적경험을 가진자 혹은 시민 대표 중 지사가 위촉한 자로 조직하고 심의회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20명, 시민의 대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특별사항을 조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심의회에 임시위원회를 설치한다.

### 3.6 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일본의 환경평가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오염규제 및 자연환경보전 부문이다. 오염규제 부문의 항목은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진동·지방침하·악취 등이며, 이와는 구분되게 자연환경의 보전 부문의 항목은 지형 및 지질적 특성·식물·동물·경관·야외레크레이션지역 등의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표IV-6).

특히 동경도의 경우는 지역개발 조사항목을 인구·산업·교통·토지이용·수역이용·관계법령의 지정 및 규제·기상·수상·대기오염·수질오염 등 총 23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의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인구항목에서는 그 지역의 인구의 동태, 밀도, 분포, 유역인구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표IV-7).

〈표IV-6〉 일본의 환경평가 항목

오염규제와 관계있는 인자	자연환경의 보전과 관계있는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오염</li> <li>- 수질오염</li> <li>- 토양오염</li> <li>- 소음</li> <li>- 진동</li> <li>- 지방침하</li> <li>- 악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 지질적 특징</li> <li>- 식물</li> <li>- 동물</li> <li>- 경관</li> <li>- 야외레크레이션지역</li> </ul>

자료: 환경처, 1993.

< 표IV-7 > 동경도의 지역개발 조사항목

항 목	조 사 사 항
인 구	인구의 동태, 밀도, 분포, 유역인구 등
산 업	용수, 연료 등
교 통	도로교통상황, 철도, 공항, 항만의 이용상황등
토 지 이 용	토지이용의 개황, 농지, 임지의 분포 등
수 역 이 용	수역의 개황, 수면이용, 수이용 등
관계법령의 지정, 규제등	관계법령으로서 지정지역, 지구, 규제내용 등
기 상	풍향, 풍속, 강수량 등
수 상	하천의 유량, 流況, 潮流, 潮位 등
대 기 오 염	대기질의 개황
수 질 오 염	수질의 개황
토 양 오 염	토양의 개황
소 음	소음의 개황
진 동	진동의 개황
저주파 공기진동	저주파 공기진동의 개황
지 반 침 하	지반침하의 개황
악 취	臭氣의 개황
일 조 저 해	일조저해의 개황
진 파 장 해	진파장해의 개황
풍 해	풍해의 개황
지형, 지질	지형, 지질의 개황
식물, 동물	식물, 동물의 개황
사적, 문화재	사적문화재의 개황
경 관	경관의 개황

자료: 환경처, 1993.

### 3.7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결과와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논의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는 독일과 비교할 경우 비교적 적극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독일과 비교할 경우, 이에 대한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 등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자체(예: 동경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의견도 이와 동일하였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중앙정부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실제적인 지자체 환경보전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이 타 지자체들에게도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평가대상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수준이 아닌 계획까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 4. 비교분석 결과 및 평가

위의 외국사례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독일·일본 등에서는 환경보전 정책을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하여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에 의해 독립적, 자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따로 조례 또는 요강 등을 제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연방 및 주정부법에 의한 평가대상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중소기업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 및 주정부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결정 및 계획단계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 나

와사끼의 경우, 새로운 시설의 계획단계에서 평가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이미 가동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환경영향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는 연방주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주민참여 제도를 대부분 도입하지 않으나, 일본은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은,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사업주관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의 관리 및 조정주체는 지자체의 주관기관이며, 작성주체는 다양하게 분석된다. 독일은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주관기관이 작성하며, 일본의 경우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사업자가 작성한다.

환경영향 평가항목은 보다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항목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독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갖는 의미가 제고되고 있으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의 강경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 보다 활발하게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운용이 유럽연합국가 및 일본 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제 V 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

### 1. 제도 도입을 위한 향후추진방향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으로서, 그 적절한 내용 및 그 효과적 집행 등 일정한 조건들을 갖출 경우,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sup>31)</sup>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법, 기술지침서, Checklist 등을 개발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 확충 및 기구의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외국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지자체의 실시목적에 부합된다고

---

31) 환경영향평가의 이론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남영숙, 1995」를 참조하기 바란다.

볼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개발정책이 우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어느 일정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자율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한 지자체의 기업들이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통합이라는 정책목표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실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교육부문을 확대 실시하고,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 훈련게임 프로그램(EIA Training Game Program)」 등을 개발하여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하여 전문성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목적 및 타 기관들과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행정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이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예방적 환경보전대책의 마련을 통한 장기적인 환경보전 목적하에 도입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의 사업 및 계획의 추진보다 시간적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함을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및 정책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환경질 목표를 명확

히 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 및 지역환경용량 등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침, 검토지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방적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환경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한번에 도입 실시하는 것보다 2년 정도의 시범실시를 거쳐 평가모형을 정립시키고 평가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범평가대상은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모형을 개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각 환경영향평가 절차별 내용과 절차에 대한 지식 및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기법적인 절차 및 관련된 조사 및 평가기술 등을 개발 습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평가제도의 내용을 확립하고, 그 효과적 집행방안 등을 강구하고자 한다.

## 2.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의 정비

### 2.1 법적 근거의 마련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법의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인 제도 실시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에게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방향설정을 지

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평가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조례는 그 특성상 관련 개별법과 연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한 청소년 수련원의 설치사업은 「청소년 수련법」, 관광지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 온천개발사업은 「온천법」, 건축물은 「건축물법」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승인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관련 항목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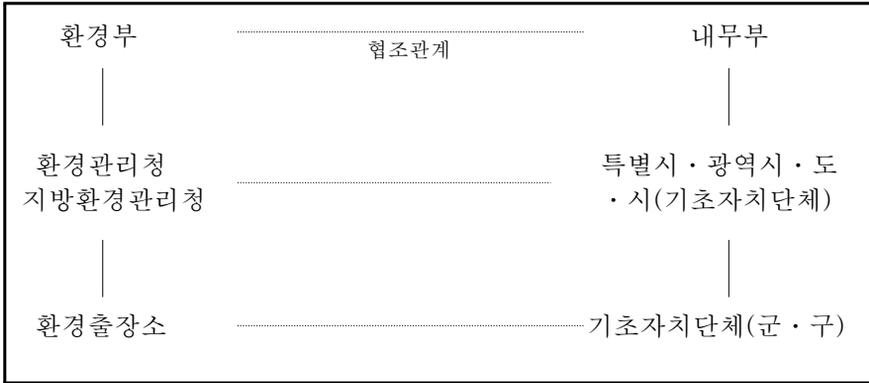
##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집행체계 구축

### 2.2.1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존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실시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환경부와 내무부, 환경관리청과 지자체는 각각 협조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V-1).

중앙에 편중된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문기능을 환경부 또는 환경관리청이 갖도록 함으로써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국가가 위임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V-2).



〈그림 V-1〉 환경영향평가 실시체계의 재정립

주 : —— 위임업무, ..... 협조업무

조례에 의한 지자체 EIA	
지자체의 과제	
지자체의 자체적 과제	위임과제 (중앙정부에 의한 위임업무)
지자체의 업무	위임업무

법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국가적 과제	
국가적 업무	

〈그림 V-2〉 법규 및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영역 비교

### 2.2.2 중앙의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관련 기능의 정립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에 의하여, 그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의 제안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지자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아직 정착화되지 못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단순히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일임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

셋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환경보전 교육 실시상태가 중앙공무원에 비해 보다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기술지침서(Technical Guideline) 등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환경영향의 효과적 예측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분야별 또는 각 단위사업별 기술지침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용이하게 하는 검토지침서를 개발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그 검토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부와 사업승인기관간의 협의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절차이므로 검토 및 협의를 위한 기준 및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적 이행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지리정보시스템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고 전문적,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32)</sup>

일곱째, 평가제도의 실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원격탐사를 이용한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의 예측을 위하여 광범위한 환경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광역

---

32)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시스템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단계별 실시에 따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원격탐사(Remote Sensing)를 이용하여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실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요하므로, 효율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2.2.3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의 과제와 기능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은 특별지방행정기구로서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와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및 기능에 대한 위임업무를 수행하며, 협조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가 인접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조정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2.4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와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환경질 목표 및 지역환경기준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환경질, 환경질목표, 환경기준 등은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가 갖는 기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정 및 관리이다.<sup>33)</sup> 즉,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주체가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는 대상이 된다.

33)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과 「사전환경성고려지침」에 의한 협의대상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수행하여야 할 과제는 기구개편과 전담인력의 확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과」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관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과는 환경영향평가관련 제반업무를 이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크게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평가관련 총괄업무, ② 평가서의 접수,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서의 검토, 미비서류의 파악 검토 ③ 평가서의 검토업무 ④ 개발사업 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업무 ⑤ 평가제도 분석, 제도개선 및 조례개정 관련업무 등이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담당과의 인력을 현재의 1인에서 최소한 9~10인(평가서의 접수 및 미비서류의 파악 검토 1인, 평가서의 검토 3인, 총괄업무 1인, 개발사업 기관 및 타 부서와의 협의 및 관련업무 2인, 평가제도 분석, 제도개선, 조례개정 관련업무 2인) 정도로 확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질 변화를 서술, 평가할 수 있는 용이하고 투명한 기법을 개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 2.2.5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구의 확충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검토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이는 법규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기능을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가 비효율적, 비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초기단계부터의 효과적 검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자문역할 및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발전위원회」 또는 「개발연구원」 등이 검토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sup>34)</sup>

### 2.2.6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 전담반」의 설치

「중앙-지방 환경영향평가 전담반」(가칭)은 중앙과 지방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가지게 된다.

동 기관은 중앙의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업무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및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자체 평가제도의 운용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평가모형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모형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제도의 내용을 디자인함으로써 비로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모형이 정립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제도의 내용에 포함시켜 환경영향평가모형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sup>35)</sup>

---

34)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5)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항목들로는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여부 둘째, 심각한 환경영향을 야기시키는 사업의 잠재적 환경영향의 평가 여부 셋째, 대안간 환경영향 비교 여부 넷째, 평가서의 공람 및 주민참여제도의 여부 다섯째, 평가결과가 사업결정에 미치는 영향 여섯째, 사후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등이다(A. Gilpin, 1994).

### 3.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시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및 실시시기는 대부분 사업의 인·허가 승인전이다. 많은 환경영향평가 실시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특히 소각장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실시에서는 기본계획의 확정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반발 등의 갈등을 초래하여 왔다. 주민과의 협상단계에서 소각시설의 설치 기본계획이 수정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시설용량 및 입지 등이 변경 수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군포 산본소각시설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등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확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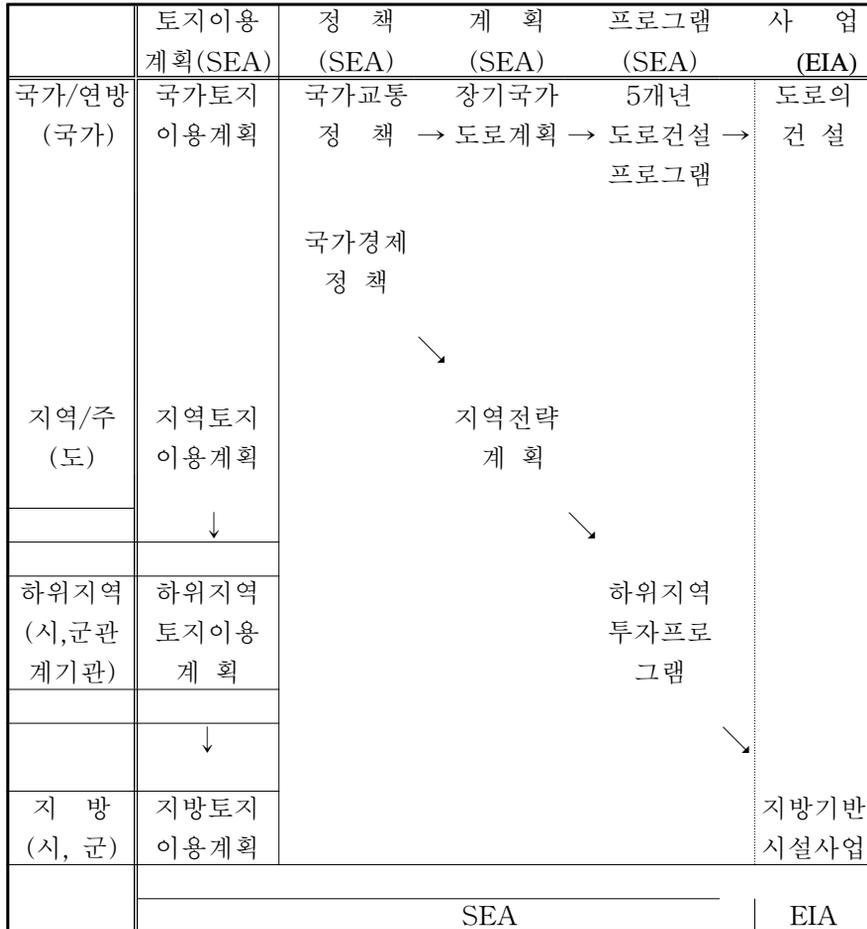
### 3.2 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외국의 경우, 개발사업(Project)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의 수립시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sup>36)</sup> 이를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의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다. 전략환경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그 대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형식에 맞추어, 체계적·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정의되고 있다.<sup>37)</sup>

---

36) 미국의 경우는 1970년 이후 수백건의 프로그램 및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J. Glasson, R. Therivel, A. Chadwick, 전제서).

아래의 <그림 V-3>은 정책결정에서 사업의 실시까지의 메카니즘과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관계를 매우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3> 정책이행 메카니즘과 SEA 와 EIA 체계

자료: J. Nixon, B.D. Clark, *EIA and Sustainable*

37) J. Glasson, R. Therivel, A. Chadwick, 전제서

*Development, 1994*

국가 또는 연방정부는 상위계획으로서의 국가토지이용계획(우리나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른 국가경제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교통정책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및 각종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을 관련 정부기관에서 수립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장기 국가 도로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5개년 도로건설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고, 이의 구체적 시행의 일환으로 도로건설을 이행하게 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마지막 의사결정 단계인 도로건설시에 실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 이외에 ‘사전환경성 고려제도’를 도입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첫째,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 지정 등의 행정계획시에 승인관련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의, 둘째, 행정기관이 수립·승인하는 행정계획 및 사업<sup>38)</sup>의 실시시에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제299호)을 근거로 하여 사전협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책·계획·프로그램단계에서의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정책 및 계획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하는 메카니즘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이는 1992년에 선포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의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동 기본원칙의 제2항은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38) 사업의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민간사업은 제외한 사업을 포함한다.

39) 김귀곤, 「미래환경과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세미나, 1994; 남영숙,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 평가제도의 개선 및 활용방안 강구」, 1994.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3항은 '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을 분석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로써 국가는 이미 가장 초기단계인 정책의 결정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4P(PPPP)를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21세기의 환경복지국가시대의 개발과 보전의 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의 권한인 지역토지이용계획, 시·군지역 투자프로그램, 지방기반시설사업 등 인·허가 승인사업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 공공기관의 구매물품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계획의 수립시란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하여 교통계획, 산업계획 등 부문별계획의 수립시 등을 의미한다. 대전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수립된 부문별 계획으로는 생활권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개발계획, 주요개발계획, 교통계획, 정보·통신계획, 공원·녹지계획, 사회개발계획, 공공시설계획, 도시방재계획 및 주요개발계획 등이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수립시란 예컨대 대전의 경우, '도시형공업유지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화공단 및 주변지역의 정비'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개발사업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진 소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환경성평가를 통하여 평가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1996년 추진된 주요 개발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미만의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지하보도 설치공사 및 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 등이

있다.

넷째, 지자체의 주요 승인개발사업인 건축물개발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 외 공공기관의 구매물품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이는 구매물품의 생산과정부터 소비, 폐기단계까지의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기술 및 산업의 육성을 유도할 수 있다.

### 3.3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 분야 23개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표 V-1). 지방자치단체는 중점평가항목의 설정시에 원인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이 원인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다 미시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표 V-2). <표 V-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발행위(원인제공자)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부문이 중화학공업이다. 경작 및 주거밀집의 행위도 환경에 미치는 요인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평가항목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지역적 민감성 또는 환경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에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은 대기질을 평가하는 항목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sup>40)</sup>

40) 이들 항목들에 대한 환경영향의 예측시에 환경매체별 영향의 정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① 물리적·사회경제적 ② 직접적·간접적 ③ 단기적·장기적 ④ 지역적·광역적 ⑤ 부정적·긍정적 ⑥ 개선할 수 있는·개선할 수 없는 ⑦ 양적·질적 ⑧ 실제적·인지적 ⑨ 개별적·지역적 ⑩ 다른 개발사업과의 관계 등이다.

〈표 V-1〉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

분야	내용항목	
1. 자연환경분야	가. 기상 나. 지형·지질 다. 동·식물 라. 해양환경 마. 수리·수문	
2. 생활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나. 대기질 다. 수질(지표·지하) 라. 토양 마. 폐기물 바. 소음·진동	사. 악취 아. 진파장해 자. 일조장해 차. 위락·경관 카. 위생·공중보건
3.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시 포함) 다. 산업 라. 공공시설 마. 교육 바. 교통 사. 문화재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표 V-2> 원인자-영향-영향해당자 영향 매트릭스

이 용 원인자영 수 인	농업					산업			채굴·채탄		에너지부문				운송·교통				폐기물		수경제			주거·택지		휴양·레저		문화
	경작	채소 경작	축산 업립	산림	어업	중화학 공업	목재·종이 섬유·가죽	식품	석탄 광물	소금	발전 소	원자 력	전신	기름·가스	도로 교통	철로 교통	수상 교통	항공 교통	매립	소각	수리적 공사	수자원 공급	수처리	밀집주거	겨울 스포츠	레저	수상 레저	문화
기후/대기 대기질/먼지	○	○		○		■		■		■													□	○	○	○	○	
화학물질	○	○		○	○	■				■								■		■			□	○	○	○	○	
악취		■	■			■	■	■							□			■	■			■	□	○	○	○	○	
소음						■	■	■						□	■		■						○	○	□	○	○	
안개일수		■				■				■	■			○		○	○						○			○		
일조장해	○					■																	□		○	○		
기온상승						■																	□					
토양 수침식	□				○									○							○	○		■	○			
바람침식	□													○														
유해물질축적	□	○				■		■	■					■			■	■				○						
수질 지하수질오염	■	■	■			■			■				■						■			○		■				
지표수질오염	□	■	■		○	■	□	■	■	■			■	■	■	■	■					○	■	□		□		
지표수 가열					○	■					□	□										○	○				○	
지하수원 증가	○	○		○				■											○		■	■	○			○	○	
지하수 침강	○	○		□																		■	□			○	○	
축진	□				○	○	○							○	○							□		○	■	○		
식물 종의 감소	■	■		■		■												■		■	■	■	■		■	○	○	
종의 밀집	□				○																		○				○	
동물 종의 감소	■	■			■									■				■		■	■		■		■	○	○	
종의 밀집	□																	■									○	
경관/경관구조 시각적 복합성의 감소	■	■		■																	■		○	○	○	○		
이용의 감소	■			■		■																■		○	○	○		
시각장해			■			■	■	■	■		■	■		■	■				■	■	■		□	□	○	○		

주 : ■ 원인자 - 영향      ○ 영향 - 영향해당자      □ 영향해당자

자료 : Braun, 1987.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 평가항목은 보다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평가항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평가대상별 평가항목 및 평가서식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사업인 건축물개발사업, 교통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조달품 등에 대한 평가대상별 중점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3.1 평가대상 1: 건축물 개발사업

대전시가 승인하여 실시되는 건축물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관련 실시계획의 수립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갈등을 제시함으로써 예방 및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실시계획 및 예산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공사기간 동안 환경친화적 공사 및 환경친화적 건축자재의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 개발사업을 위한 평가항목은 ① 환경친화적 자재의 이용, ② 교목의 보호 ③ 주변경관의 보호, 토양부분, 경관보호, 수질보호 등 미시적인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재의 이용부문에서는 ① 용해제가 적게 함유된 페인트, ② 보호용 페인트 및 니스, ③ 용해제가 적게 함유된 건설용 화학품, ④ 중금속이 적게 함유된 부식방지용 물품, ⑤ 목재보호용 자재, ⑥ 윤활제와 엔진오일, ⑦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⑧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의 항목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교목의 보호부문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활용하도록 한다. 교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뿌리부분의 흙의 조밀화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① 기계와 승용차, 자전거 등으로 뿌리부

분을 밟는 행위, ② 토양압축 기구의 이용, ③ 중량의 기계 설치, ④ 지속적으로 토양을 밟음, ⑤ 식당차, 공사차량 등의 설치, ⑥ 건축자재의 적재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목의 보호를 위해 토양이 보호되어야 하는데 ① 토양의 습기 유지(특히, 점토 및 진흙 성분 함유된 토양의 습기 유지), ② 토양 성토 및 절토, ③ 교목의 제거, ④ 비오둑의 훼손 등의 항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변경관의 보호부문에서는 ① 공사장 화물차량의 교통, ② 공사장 임부숙식시설, ③ 공사장소음, ④ 논두렁·잔디밭·올타리·나뭇가지·덤불의 제거, ⑤ 보호수목의 제거, ⑥ 건축재의 임시적재, ⑦ 휴양기능 피해 등의 항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특정폐기물 처리부문에서는 ① 건축폐기물, ② 농약·의약품·화학품·페인트·니스 등의 잔류물, ③ 유기성 용해제의 사용으로 인한 변화, ④ 환경에 해로운 아스팔트, ⑤ 접합제로서의 타르, ⑥ 수질 오염물질(기름), ⑦ 토양의 중금속 오염 등의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질보호부문에서는 먼저 수질보호지역내 공사입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지하수 보호부문에서는 ① 지하수 생성 중단, ② 지하수위 하강, ③ 지하수질 영향 피해, ④ 지하수 흐름의 방향 변화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표수 보호부문에서는 ① 수위 상승 또는 하강, ② 방출 및 배수구 개선, ③ 지표수질오염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기 및 토양보호부문에서는 ① 먼지·매연·증기 등의 대기오염, ② 토양의 포장화, ③ 토양의 조밀화, ④ 토양굴착 및 성토, ⑤ 토양의 교체, ⑥ 토양의 배수 등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음 및 폐기물처리 부문에서는 ① 공사계획의 소음공해 유발, ② 공사기간중 소음 유발, ③ 폐건축재, ④ 폐아스팔트, ⑤ 도로의 절단 및 파괴, ⑥ 소각재 등의 항목을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건축물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서식은 <표 V-3>와 같다.

〈표 V-2〉 건축물개발사업 환경영향 평가 항목 및 서식

	환경에 미치는 갈등여부 예 / 아니오	해소방안 / 설정이유
<p><b>환경친화적 상품의 이용</b></p> <p>용해제가 적게 함유된 페인트 보호용 페인트 및 니스 용해제가 적게 함유된 건설화학품 중금속이 적게 함유된 부식보호물 목재보호물 윤활제와 엔진오일 재활용 플라스틱의 사용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p>		
<p><b>교목의 보호</b></p> <p>뿌리부분의 흙의 조밀화를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와 승용차, 자전거 등으로   뿌리부분을 밟는 행위</li> <li>· 토양조밀 기구의 이용</li> <li>· 중량의 기계 설치</li> <li>· 지속적으로 밟고 지나 다님</li> <li>· 식당차, 공사차량 등의 설치</li> <li>· 건축자재의 적재</li> </ul> <p>수목보호를 위한 토양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의 습기 유지(특히, 점토   및 진흙 성분 함유된 토양의 습   기 유지)</li> <li>· 토양 성토</li> <li>· 토양 절토</li> <li>· 교목의 제거</li> <li>· 비오톱의 훼손</li> </ul>		

<계속>

	환경에 미치는 갈등여부 예 / 아니오	해소방안 / 설정이유
<p><b>주변경관의 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장 화물차량의 교통</li> <li>· 임부숙박시설</li> <li>· 공사장소음</li> <li>· 논두렁, 잔디밭, 울타리, 나뭇가지, 덩불의 제거</li> <li>· 보호수의 제거</li> <li>· 건축재의 임시적재</li> <li>· 휴양기능 피해</li> </ul>		
<p><b>특정폐기물 처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폐기물</li> <li>· 농약, 의약품, 화학품, 페인트, 니스 등의 폐기물</li> <li>· 유기성 용해제의 사용으로 인한 변화</li> <li>· 환경에 해로운 아스팔트</li> <li>· 접합제로서의 타르</li> <li>· 수질오염물질(기름)</li> <li>· 토양의 중금속 오염</li> </ul>		
<p><b>수질보호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보호지역내 공사입지 여부</li> </ul>		
<p><b>지하수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 생성 중단</li> <li>· 지하수위 하강</li> <li>· 지하수질 영향 피해</li> <li>· 지하수 흐름의 방향 변화</li> </ul>		
<p><b>지표수 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위 상승 또는 하강</li> <li>· 방출 및 배수구 개선</li> <li>· 지표수질오염</li> </ul>		

계		속	
		환경에 미치는 갈등여부 예 / 아니오	해소방안 / 설정이유
<b>대기</b>			
· 먼지, 매연, 증기 등의 대기오염			
<b>토양</b>			
· 토양의 포장화			
· 토양의 조밀화			
· 토양굴착 및 파냄			
· 토양 성토			
· 토양 교체			
· 토양 배수			
<b>소음</b>			
· 공사계획의 소음공해 유발			
· 공사기간중 소음 유발			
<b>폐기물</b>			
· 폐건축재			
· 폐아스팔트			
· 도로의 절단 및 파괴			
· 소각재			

### 3.3.2 평가대상 2: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 대책의 수립시에 평가항목은 물리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항목을 제외시켰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환경영향의 범위를 첫째, 도시계획 및 경관 둘째, 기후 및 대기 셋째, 소음 넷째, 토양 다섯째, 지하수 여섯째, 지표수 일곱째, 동·식물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자 한다(표 V-4).

첫째, 도시계획 및 경관부문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고려하는 항목이다. 이를 위한 중점평가항목은 ① 교통의 안전성, ② 시간 및 에너지 소비, ③ 교통 체증, ④ 교통수단의 선택, ⑤ 도시계획적 분산효과, ⑥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주거가치, ⑦ 녹지 및 레저 지역의 생태적 의미의 상실, ⑧ 휴양가치의 손실, ⑨ 기존의 잠재적인 자연보호지역의 피해, ⑩ 문화의 부정적 변화, ⑪ 토지 이용, ⑫ 유사한 그룹의 경관의 분리, ⑬ 도시 및 경관미의 손실 등이다.

둘째, 기후 및 대기부문의 중점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기순환의 장애, ② 안개일수의 증가로 인한 공기습도의 증가, ③ 일조 및 광선 장애, ④ SO<sub>2</sub>, CO, CO<sub>2</sub> 등오염물질 배출의 증가, ⑤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증가, ⑥ 먼지오염의 증가, ⑦ 악취오염의 증대, ⑧ 에너지사용량의 증가(NO<sub>2</sub>의 증가) 등이다.

셋째, 소음부문의 중점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음오염의 증가, ② 소음기준의 초과 등이다.

넷째, 토양부문의 중점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변의 유해물질의 농축, ② 토양의 포장화, ③ 지표 및 토지 이용면적의 변화, ④ 지표면의 수자원 함유능력의 감소, ⑤ 지표의 손실 등이다.

다섯째, 지하수부문의 중점평가항목으로는 ① 지하수질의 오염 피해, ② 수질오염물질의 침투로 인한 지하수 피해/오염, ③ 지하수자원량의 감소, ④ 수원지역의 오염, ⑤ 잠재적 수원지역 오염, ⑥ 지하수위 상승, ⑦ 지하수위의 하강 등이다.

여섯째, 지표수부문의 중점평가항목으로는 ①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② 수자원량의 감소, ③ 넓은 면적의 아스팔트화로 인한 피해, ④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량속도의 증가, 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량속도의 감소, ⑥ 홍수피해의 증가, ⑦ 수중 동·식물의 서식조건 악화, ⑧ 변화에 따른 호소 및 하천의 고유특성의 피해, ⑨ 하수처리시스템에 미치는 피해 등이다.

일곱째, 동·식물부문의 중점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동

물군의 서식에 미치는 피해, ② 식물·식물군의 서식에 미치는 피해, ③ 비오톱(Biotop)과 동식물의 서식지의 피해, ④ 비오톱 발전 잠재력의 파괴, ⑤ 생태적 의미가 있는 면적 및 공간의 분리, ⑥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숲의(산림) 손실, ⑦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의 손실, ⑧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손실 등이다.

〈표 V-3〉 교통계획 수립시의 환경영향별 평가항목 및 서식

		평가대상 :							
영 향 분 야	영향의 종류/인자	평 가					영 향 이 없 음	긍 정 적  다 소	매 우
		부 정 적		미		영향 이 없 음			
		아 주 강 하 게	강 하 게	약 간	미 미 함				
1. 도시 계획 및 경관	1. 교통안전 2. 시간 및 에너지 낭비 3. 교통 체증 4. 교통수단의 선택 5. 도시계획적 분산 효과 6. 주변지역과의 조화 및 주거가치 7. 녹지 및 레저 지역의 생태적 의미의 상실 8. 휴양가치의 손실 9. 기존의 잠재적인 자연보호지역의 피해 10. 문화의 부정적 변화 11. 토지 이용 12. 유사 경관의 분리 13. 도시 및 경관미의 손실								
	합 계								

<계속>

평가대상 :								
영 향 분 야	영향의 종류/인자	평 가						
		아 주 강 하 게	부 정 적 강 하 게	약 간	진 현	영 향 이 없 음	긍 정 적 대 소	매 우
2. 기후/ 대기	1. 청정공기순환의 장애 : a) 광역적 공간 b) 국부적 공간							
	2. 공기습도의 증가 (안개생성)							
	3. 일조 및 광선 장애							
	4. SO <sub>2</sub> , CO, CO <sub>2</sub> 등 오염 물질 배출의 증가							
	5. 오염물질 영향 증가							
	6. 먼지오염의 증가							
	7. 악취오염의 증가							
	8. 에너지 사용량의 증 가 (NO <sub>2</sub> 의 증가)							
	합 계							
3. 소음	1. 소음배출증가							
	2. 소음기준의 초과 : a) 주거지역 b) 공장지역 c) 휴양지역							
	합 계							

<계속>

목 적								
영 향 분 야	영향의 종류/인자	평 가						
		부 정 적				영 향 이 없 음	공 정 적	
		아 주 강 하 게	강 하 게	약 간	전 혀		다 소	매 우
4. 토양	1. 도로변의 유해물질 농축							
	2. 토양의 포장율 - 도심지 - 변두리 - 바깥지역							
	3. 지표 및 토양 이용 면적 변화							
	4. 지표면의 수자원 함유능력의 감소							
	5. 지표의 손실							
	합 계							
5. 지하 수	1. 지하수질의 피해							
	2. 수질오염물질의 침투로 인한 지하수 피해/오염							
	3. 지하수량의 감소							
	4. 수원지역의 오염							
	5. 잠재적 수원지역 오염							
	6. 지하수위 상승							
	7. 지하수위 하강							
	합 계							

<계속>

목 적								
영 향 분 야	영향의 종류/인자	평 가						
		부 정 적				영 향 이 없 음	금 정 적	
		아 주 강 하 게	강 하 게	약 간	전 혀			다 소
6. 지표 수	1.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피해							
	2. 수자원량의 감소							
	3. 대규모 면적에 대한 포장화로 인한 피해							
	4.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하는 유량속도의 증가							
	5.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하는 유량속도의 감소							
	6. 홍수피해의 증가							
	7. 수중 동·식물의 서식조건의 악화							
	8. 변화에 따른 호소 및 하천의 고유특성 의 피해							
	9. 하수처리시스템에 대한 피해							
	합            계							

<계속>

목 적								
영 향 분 야	영향의 종류/인자	평 가						
		부 정 적				영 향 이 없 음	금 정 적	
		아 주 강 하 게	강 하 게	약 간	전 혀			다 소
7. 동· 식물	1. 동물·동물군집의 생존에 미치는 피해							
	2. 식물·식물군의 생존에 미치는 피해							
	3. 비오톱과 동식물의 서식지의 피해							
	4. 기존 비오톱의 발전 잠재력에 미치는 피해							
	5. 생태적 의미를 지닌 토지 및 공간의 분리							
	6. 생태적 가치가 있는 숲의(산림) 손실							
	7. 생태적 가치가 있는 녹지의 손실							
	8.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손실							
	합 계							

3.3.3 평가대상 3: 지자체 공공구매물품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조달품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지역의 환경친화적

상품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건물의 구매물품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사무용 부문, 둘째, 공공건물의 세제의 이용이다.

사무용 부문의 환경영향 평가기준은 첫째,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인가의 여부 둘째, 재이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인가의 여부 셋째, 매립 또는 소각시켰을 경우의 환경독성 물질의 배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무실 부문의 공공구매물품의 종류로는 ① 종이류·봉투·포장재, ② 사무용 화학품 및 건전지 등의 사무용품, ③ 사무용가구, ④ 컴퓨터기와 복사기 등의 사무용기기, ⑤ 인쇄시설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공공건물에 대한 세제의 이용부문에서는 첫째, 세제의 생분해성이 우수하며 둘째, 분해될 때의 환경독성이 적어야 하며 셋째, 수질의 부영양화현상을 야기하지 않으며 넷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세정력이 우수한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바닥 청소용 및 창문세탁용 세제, 카페트세탁용 세제, 화장실용 세제, 주방용세제, 가구손질용 세제, 세척제 등 세제 및 보조세제의 선정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용이 규제된 내용물질의 사용 여부, 사용이 규제된 세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표 V-5).

<표V-4> 공공기관 구매물품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서식

환경친화적 사무용품의 이용	환경에 미치는 갈등여부 예/아니오			해소방안 / 선정이유
	생산단계	이용단계	폐기단계	
- 종이류, 봉투, 포장재 - 필기류 · 연필, 볼펜, 싸인펜 등 - 사무용 화학품 - 건전지 - 사무용 가구 - 컴퓨터 - 복사기 - 인쇄기 - 기타				
환경친화적 세제용품의 이용	A	B	C	D
- 바닥청소용 세제 - 창문청소용 세제 - 카페트세탁용 세제 - 화장실용 세제 - 주방용 세제 - 가구손질용 세제 - 비누 - 기타				

주: A 세제의 생분해성 우수 여부  
 B 분해시 환경독성 여부  
 C 수질의 부영양화 야기 여부  
 D 세정력의 우수 여부

### 3.4 평가주체

평가주체를 설정하기 위하여 누가(또는 어느 기관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관련 기관 및 부서를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평가주체가 복수이다. 즉,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이고, 승인기관은 평가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검토기관은 평가를 조정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고 이들 주체중 평가서 작성주체가 개발사업자이므로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는 평가의 공정성 결여와 관련한다. 그 이유로 첫째,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평가대행자를 직접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고, 대기업인 경우 하부기관에 평가서 작성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둘째, 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비용은 개발주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는 평가서의 작성자가 평가서를 객관적으로 작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작성주체는 개발사업자가 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규에 의한 체계를 따르지 않고, 보다 평가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즉, 평가서는 개발사업자(민간 또는 공공기관)가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평가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평가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부서에 납부하고, 동 부서가 평가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 검토기관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의 지역발전연구원에 검토기능을 부여하여 평가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검토과정에 ‘지역주민협의체’ 등의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의 공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다. 만약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다면, 관련 ‘환경관리청’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법개정안에 의거 설립될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구가 검토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기능은 지자체내의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 3.5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기존 우리나라의 복잡한 행정체계의 변화를 요구함으로써 기존의 계획을 실현하고, 승인을 하는 행정을 변화시킨다. 이에 대해 실무자들은 한편으로는 환경개선을 가능케 하는 제도라고 여길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절차로 인식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행정의 결정이 경제성장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부서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운용은 전문분야간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효과는 관련기관의 환경보전인식, 책임 그리고 집념에 의해 좌우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는 환경보전의 개선을 위한 공동적인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예방환경보전 수단으로서 영향력있는 절차를 갖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행정기관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지자체의 서로 다른 목표설정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절차로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이행될 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계획기관의 환경영향평가 관련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환경영향평가 목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의 절차에 비해 장기적이고 서

로 상이한 평가절차가 예방적 대책을 통하여 환경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문기관간의 공동작업과 결정이 보완적 절차로서 필요하며, 계획의도에 대한 계획과 공인 절차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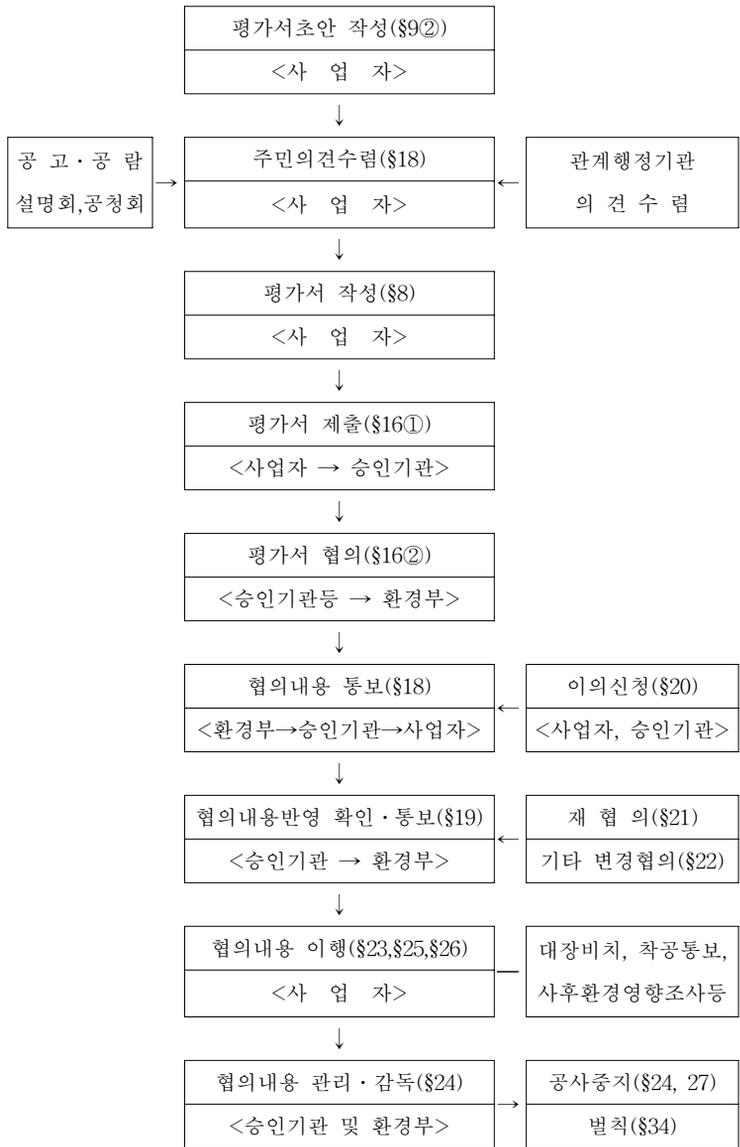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절차를 결정하는데는 다음의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일단계 절차로서, 일정 평가대상을 설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림 V-4) 이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차이다. 이는 평가대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대규모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발사업의 특성상 환경영향을 심각하게 야기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간과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간편한 절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경제적 노력을 과잉 투자하여야 하는 단점도 갖고 있다.

둘째, 이단계 절차로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제1단계에서 예비환경성조사를 통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정도를 판단한 후, 제2단계에서는 주환경성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의 국가들에서 선정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평가대상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예비환경성조사를 통하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역적 특성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향이 큰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셋째, 다단계 절차로서 이는 중요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단계에 부분적으로 환경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필요한 단계에 순발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평가대상을 포괄적,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위 세 가지 방법중 전문가들에게 가장 좋은 절차로 평가받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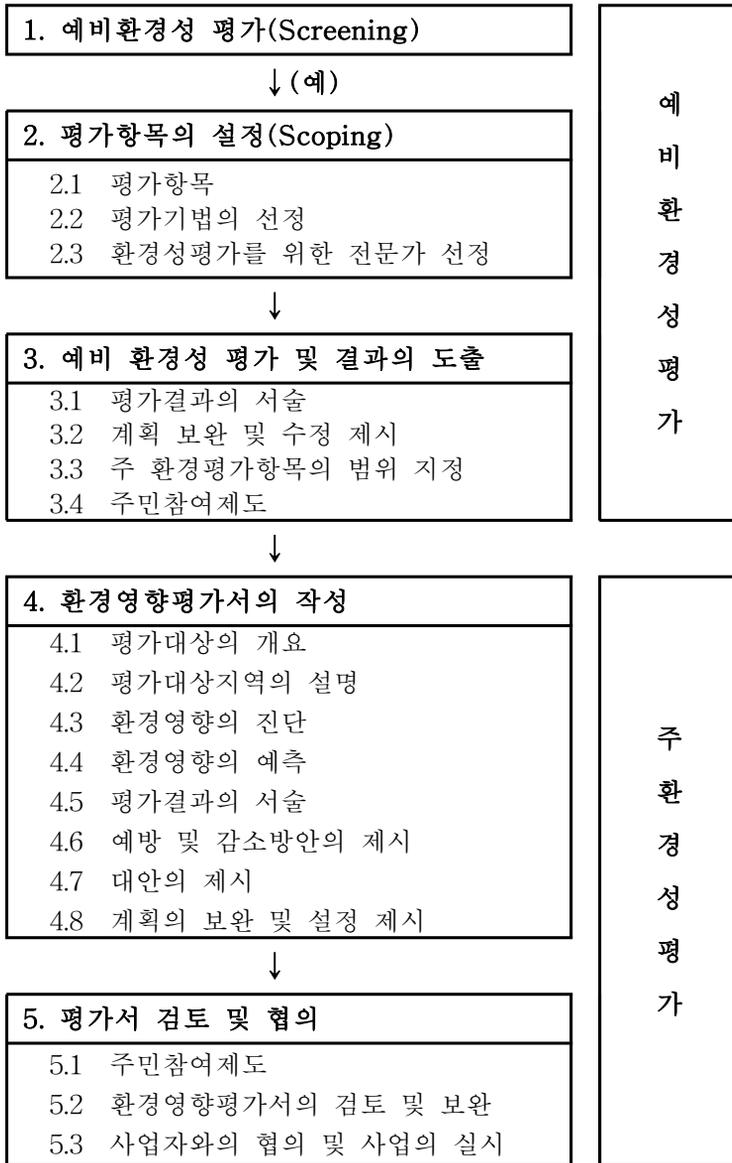
〈그림 V-4〉 환경영향평가절차

방법이 이단계 절차이다. 그 이유는 이단계 절차방법이 환경영향을 심각(significant)하게 야기시킬 수 있는 개발사업이 간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평가절차상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실시절차는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단계 절차방법을 설정하도록 한다.<sup>41)</sup> 즉, 예비환경성평가와 주환경성평가 방법이다. 이를 다섯 소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 V-5>와 같다. 이 중 첫 번째 소단계부터 세 번째 소단계 까지를 예비평가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평가단계에서 환경문제의 야기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평가인 네 번째 소단계 및 다섯 번째 소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

41) 이는 이단계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모형에 적용시킴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용이하게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절차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V-5〉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

소단계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단계에서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 만약 영향이 극히 미비할 것으로 평가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다.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된다면, 환경영향평가의 다음단계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예비환경성평가를 위한 기준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을 <표 V-6>에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젝트의 적정비용의 수준, 영향의 범위, 사업의 대규모성 여부, 대상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및 유해폐기물,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의 다량배출 여부 등의 항목들을 주요 예비환경성평가항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번째 소단계에서는 중점평가항목을 설정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상태가 악화될 것인가, 개선될 것인가, 상호간에 어떤 해결책이 존재하나 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① 공간적 대안(입지), ② 시간적 대안, ③ No Action대안(일명 제로대안으로도 통용), ④ 조성, 재료, 기술 대안, ⑤ 사용, 이용, 조건 대안 등이다.

그리고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환경영향의 진단방법, 평가기준 및 지표의 조사절차 및 범위 설정, 환경영향 예측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의 활용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누가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즉, 관련담당자(지자체 기관), 사업기관, 대학연구소, 평가대행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다.<sup>42)</sup>

---

42) 평가대행업체의 지정기준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5〉 예비환경성평가 기준

	기 준	등급	점수
1	프로젝트 시행에 있어서 적정 비용이 어떠한가?	High Medium Low	10 5 0
2	건설 및 개발행위로 인한 영향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High Medium Low	10 5 0
3	건설중에 프로젝트의 형태(industrial type)가 대규모로 될 것인가?	Yes No	10 0
4	물과 관련된 건설행위가 대규모로 될 것인가?	Yes No	10 0
5	상당한 쓰레기배출이나 유해폐기물의 발생이 예상되는가?	Yes No	10 0
6	프로젝트의 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상당한 고품폐기물의 처리(양 및 혼합물)가 예상되는가?	Yes No	10 0
7	프로젝트의 시행 및 운영과정에서 대기중에 배출되는 상당한 오염방출이 예상되는가?	Yes No	10 0
8	영향을 받는 인구는 어느 정도인가?	High Medium Low	10 5 0
9	프로젝트로 인하여 어떠한 자원에(지질, 역사, 고고학, 문화, 멸종위기에 있는 또는 그러한 위협을 받는 중)영향을 주는가?	Yes No	10 0
10	홍수범람지에 건설행위가 이루어지는가?	Yes No	10 0
11	건설행위 및 운영으로 인하여 미적인 가치, 소음, 악취, 일반적인 수용력등의 관점에서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서로 상충되는가?	Yes No	10 0
12	프로젝트 운영기간중 현존하는 지역기반시설이 새로운 수요를 취급할 수 있는가?(도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기반시설, 공공의료시설, 직업교육 그밖의 시설)	Yes No	10 0

자료: R.K. Jain, et al. 1993, p. 164.

세 번째 소단계가 예비환경성평가 결과의 도출이다. 예비 환경성평가 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에 대하여 첫째, 어떤 요인이 어떤 환경분야에 막대한 환경영향을 끼치는가 둘째, 보호 또는 위기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입지가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 셋째, 조사대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관련 대상인가의 여부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환경성평가 결과를 명확히 하고, 결과를 행정서류로 작성함으로써 효과를 제고한다. 결과보고서는 관련기관, 관리기관, 대상 관련사업자 등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로써 가능한 영향평가의 범위에서 책임을 갖도록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를 이용할 경우, 분야별 과제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의 내용은 전문성의 깊이, 폭, 서술방법 등이 적정하여야 하며 시장, 국장 등 결정자 등에게 정책결정을 위한 주요자료로 인식되어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네 번째 소단계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다. 동단계에서는 환경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문서화(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의 작성목적은 환경영향조사의 문서화 및 정책결정자가 근본적인 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적 핵심이 된다. 이 단계에서 조사대상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진단, 서술, 평가하여야 한다.

입지 및 주변의 특성은 최소한 공간적 차이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즉, 지역적 영향 또는 광역적 영향 등 상이한 기준으로 대상지역을 구분한다면, 지역적 영향권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광역적 영향권은 보다 광범위하게 서술하여도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환경정보, 토양지도, 기후, 소음지도, 배출원 및 영향지역의 목록 등 정보원의 폭을 확대 이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공간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지식)의 구축은 환경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지향적인 환경지자체의 조건으로서 향후 이와 같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목록, 환경통계 등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이 환경에 미치는 작용과 주변지역이 조사대상에 미치는 환경작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checklist 개발이 필요하다.

각 개별적 작용은 질과 양적인 차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계획관련자료, 프로젝트 개요설명 및 그밖의 데이터들로부터 또는 유사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출·예측·추측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주체나 전문가를 통하여 이에 관한 자료로 보완하도록 한다.

위의 단계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어떤 영향은 타 영향과 비교만 할 수 있거나, 양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나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야 한다. 보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예컨대 토지의 아스팔트화 등의 환경작용은 하나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생명, 지하수질의 변화, 지역기후 등의 여러 환경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는 매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까지도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인간·동식물·대기·기후·물과 토양간의 상호영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영향의 예측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데, 소음예측·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영향예측 또는 기후적·수모적·동식물적 영향예측은 보다 과학적인 방법과 기술에 의해서 파악되어질 수 있다.

또한 동 단계에서는 파악된 환경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 조사대상이 환경친화적인가의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파악된 영향에 대한 전문적 평가가 필수적이며 이 단계에서 Matrix 등을 이용한다. 한편, 환경 및 작용분야에 따른 평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① 대안비교 및 비교평가된 대안책, ② 지역적인 환경적 목표, ③ 허용기준·배출기준·고려검토기준 등의 평가기준 또는 인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평가절차를 선정하여야 한다.<sup>43)</sup>

평가절차의 목적은 첫째, 관련된 평가대상을 투명하게 하는데 있으

며, 둘째, 정책결정자들을 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이해하기가 용이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다양한 대안책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전문가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결과의 조작, 각 매체별 평가결과를 전체로 합산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삼가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의 환경매체별 환경영향의 평가 및 대안은 병행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각 환경분야별 평가와 일정시간후의 예측치가 비교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서의 작성시에 조사대상의 예기치 않은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방 및 저감방안, 불가피한 환경영향 등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조사 과정에서 전문가가 얻게된 인식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평가보고서에 계획의 보완 등 최종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번째 소단계가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단계로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동단계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결과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경우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보완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3.6 주민참여제도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의 실시와 함께 지역주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및 계획

---

43) Benefit Worth analysis 절차, ecological risk analysis 절차 등의 방법을 이용한 평가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의 수립 등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단계에서 주민참여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 3.7 평가서의 검토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핵심중의 하나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영향평가항목에 대한 환경영향에 관한 질적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평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sup>44)</sup>

첫째, 평가항목의 환경영향 확인 여부, 악영향의 확인, 불가피한 환경영향의 열거

둘째, 설정된 중점평가항목의 영향조사 여부

셋째,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영향조사 이행 여부

넷째, 평가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서술 여부

다섯째, 입지 및 대상지역의 환경민감성, 보호요구성, 오염도, 피해성 등에 대한 작성 여부

여섯째, 영향의 사실적·시간적·공간적 예측에 대한 작성 여부

일곱째, No Action대안(제로대안)의 검토여부

여덟째, 대안의 평가, 입지 및 대상지역의 특성

아홉째, 평가대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상지역이 평가항목에 미치는 영향 예측 여부와 이로 인한 환경영향의 확인 여부 등이다.

---

44) 남영숙,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 1995.

### 3.8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도 이의 도입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사업계획 승인과정에 필요한 절차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승인기관은 이를 참작하여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sup>45)</sup>

협의내용의 보다 실질적인 이행과 사후관리제도의 보다 효율적 시행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와 사업계획 승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승인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승인부와 환경부의 이중적 관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

둘째, 사후관리를 위한 환경 관련부서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주민참여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사후관리를 통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환경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의 실시로 야기된 환경피해를 객관화·계량화하여 사업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연환경을 복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sup>46)</sup> 이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환경정보의 구축, 인간의 행위와 환

45) 사후 이행은 승인내용의 이행여부 그 자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사후관리 개념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6)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사업활동 등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에 분명한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

경과피,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계량화기법의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3.9 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 운영단계에서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감사제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로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지역의 특성 등 사안별로 보다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47)</sup> 사후환경영향 조사항목에 대기 및 수질 등의 환경질 측정 및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환경관리기구, 관리 및 운영비용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측하고 있다.

47) 남영숙, 전계서, 1995.

## 제VI장 결 론

1969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문제의 예방적 차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세계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제도의 도입 운용 및 활성화 방안강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sup>48)</sup>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은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환경문제가 보다 광역화·복잡화되어감에 따라, 선진국가 및 국제기구는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보다도 지역 또는 지방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보전을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를 인식하고 7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일본이다. 위 두 국가들은 환경선진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본격적으로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기능 제고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지방정부는 의제21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제 21’을 작성하는 등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1995년 우리나라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된 지방화와 시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중이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실시로 인하여 지방정부에 많은 행정업무가 이양되었고, 지방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책임 및 권한을 가진 주체가 되고 있다.

48) 국제기구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회의로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ED);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등이 있다.

지자제 실시이후 비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지자체가 실시되기 이전에 우려되었던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이 1992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sup>49)</sup>

이러한 국내외적 논의와 국내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급히 증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환경보전 방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환경기본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인 지역환경보전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내 환경보전에 커다란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기관 및 사업자에게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능동적 환경보전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정책결정자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 국내도입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고의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할 수 있도록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기법,

49) 양병이 외, 「개발사업 환경적합성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992; 남영숙,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 분석과 환경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1993; 남영숙,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평가모형의 개선 및 활용방안 강구」 등

기술지침서 등을 개발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 확충 및 기구의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교육부문을 확대 실시하고,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 훈련게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론적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을 통하여 전문성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영향평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목적 및 타 기관들과 충돌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행정기관, 즉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등이 인식하여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예방적 환경보전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환경보전 목적하에 도입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기존의 사업 및 계획의 추진보다 시간적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함을 이해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부서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상호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가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및 정책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환경질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환경영향평가를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침, 검토지침 등을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예방적 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환경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정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립에 있어서 그 내실성을 위

한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여부 둘째, 심각한 환경영향을 야기시키는 사업의 잠재적 환경영향의 평가 여부 셋째, 대안간 환경영향 비교 여부 넷째, 평가서의 공람 및 주민참여제도의 여부 다섯째, 평가결과의 사업결정에 미치는 영향 여섯째, 사후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한번에 도입 실시하는 것보다 2년 정도의 시범실시를 거쳐 평가모형을 정립시키고 평가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범평가대상은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여부를 지자체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조정 및 지원하에 모든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자체의 지역경제가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할 경우,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기업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두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이라는 정책목표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먼저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도입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국립환경연구원,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세미나, 1994. 6
- 국토개발연구원,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프랑스·서독·일본의 경우-』, 1989. 12
- 금창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6
- 김귀곤, 『미래환경과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세미나, 1994.
- 남영숙, 『지방화를 대비한 환경적합성 평가모형의 개선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12
- 남영숙,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시의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관리운영에 따른 기술지침의 설정』, 1995.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연구』, 1996. 5.
- \_\_\_\_\_,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1991.
- \_\_\_\_\_, 『대전환경개선종합계획』, 1993. 6
- \_\_\_\_\_, 『우리의 환경보전』
- \_\_\_\_\_, 『환경문화대전 계획』
- 법제처(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관광진흥법』, 대한민국법령집, 제42권, 1995
- \_\_\_\_\_,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_\_\_\_\_, 『도시계획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도시재개발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먹는물 관리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_\_\_\_\_,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소음·진동규제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_\_\_\_\_, 『수질환경보전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_\_\_\_\_, 『자연환경보전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_\_\_\_\_, 『주택건설촉진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택지개발촉진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5권, 1995
- \_\_\_\_\_,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_\_\_\_\_, 『폐기물관리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_\_\_\_\_,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법령집, 제34권, 1995
- \_\_\_\_\_, 『해양오염방지법』, 대한민국법령집, 제39권, 1995
- 이동근 외, 『생태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7.
- 이창우, “우리나라 도시의 환경보전적 실태와 과제”, 『우리나라의 도시는 과연 지속가능한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제4회 도시·환경정책세미나, 1996. 10.
- 정도영,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설명』, 『환경영향평가 재실화를 위한 세미나』, 환경영향평가협회, 1996. 11
- 정희성,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4. 6
- 한국경제신문, ‘지역경제 : 대전-열악한 기업환경’, 1996. 11.26-27 45면
- 한국도시행정연구소, 『전국통계연감』, 1996.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비교연구』, 1986. 1

- 환경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국제 회의 참가 보고서」, 1995. 11
- 환경부, 「환경연감」, 1995.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1995. 5
- 환경처, 「일본의 환경정책 -귀국보고서-」, 1994. 6.

## 2. 국외문헌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Landesentwicklung und Umweltfragen, *Die UVP*, 1995.
- U. Bückler, S. Scharf, *UVP in der Bauleitplanung für kleinere Gemeinden*, 1994.
- Der Bundesminister für Raumordnung, Bauwesen und Städtebau,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in der Stadt- und Dorfplanung*, 1991.
- 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r Aus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UVP* vom 18. Sep. 1995.
- L. Chabason, C. Larrue,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by the french administration*, 1993.
- Fiedler, *Kommunal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en*, 1989.
- France Government, *Lois : Amenagement et protection du littoral*
- A. Gilp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1995.
- J. Glasson, R. Therivel, A. Chadwick, *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994.
- K. Hübler, M. Zimmermann, *UVP am Wendepunkt*, Economica Verlag, 1992
-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die*

- internationale Umweltagentur der Gemeinde stellt sich vor*, 1996.
- Ch. Jacoby, *Kommunale UVP*, 1988,
- R.K. Jain et al., *Environmental Assessment*, 1993.
- V. Kleinschmidt(eds.), *Kommunale UVP*, 1994.
- H. Mäding, *Die UVP als Verwaltungsaufgabe im Rahmen präventiver Umweltpolitik*, 1994.
- Ministere de l'Environment, *Etude d'Impact sur l'Environnement: Legislation, Decrets et Circulaire d'Applocation*, 1994.
- \_\_\_\_\_, *Enquete publique*, 1995-1996.
- P. Nijkamp, A. Perrels, *Sustainable Cities in Europe*, 1994.
- A. Nixon, B. Clark, *EI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Key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세미나, 1994.
- NordREFO/OECD, *Regional Policies and the Environment*, 1994.
- K. Otto-Zimmermann(eds.), *UVP in der Kommunalverwaltung*, 1990.
- \_\_\_\_\_, *Arbeitsschritte zur Durchführung von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en*, 1990.
- \_\_\_\_\_, *Das Verhältnis zwischen gesetzlicher und freiwilliger kommunaler UVP*, 1990.
- W. Ried, *Implementing SEA for the communitz masterplan of Saarbrücken*, 1994.
- Stadt Erlagen, *Daten zur Umwelt: Umweltzustand der Stadt Erlagen im Vergleich mit drei europäischen Städten*, 1993.
- Stadt Erlagen/Referat für Recht und Umweltschutz, *Umweltbericht: Förderung der rationellen Trinwassernutzung und Maßnahmen zur Verringerung der Abwassermengen*, 1991.
- \_\_\_\_\_, *Umweltbericht: Kommunale UVP*, 1992.

- Stadt Erlagen/Referat für Recht und Umweltschutz/Referat für Stadtplanung und Bauwesen, *UVP bei der Flächennutzungsplanung in Erlagen - Fallstudie* -, 1995.
- Stadtverband Saarbrücken, *Strategische Umweltvorsorge in der Flächennutzungsplanung*, 1995.
- Stadtverband Saarbrücken/Umweltamt, *UVP für den Flächennutzungsplan*, 1995.
- M. Storksdieck, K. Otto-Zimmerman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n Example for environmental controlling*, First International Expert Seminar 「Advanced Environmental Management Tools and Environmental Budgeting at Local Level」, March 14-16, 1994.
- Die Umweltregion Nürnberg, *Initiativen, Kooperationen, Perspektiven*, 1996.
- Votsmeier/Mengden, *UVP im Baugenehmigungsverfahren*, 1989.
- D. Wagner, *Kommunale UVP in Kalifornien*, 1989.
- G. Will, *Erfahrungen mit der Kommunalen UVP*, 1989.
- 環境廳企劃調整局 環境影響評價課 編, 『日本の環境アセスメント』, 1995. 12.
- 松本秀雄, ‘川崎市における環境アセスメントの経験’, 『環境情報科学』, 1982. 11.
- 森田恒幸, ‘地方自治体における環境影響評価制度の比較分析’, 『環境情報科学』, 1982. 11.
- 飯田務, ‘東京都環境影響評価条例の特色’, 『環境情報科学』, 1982. 11.

## 부 록

부록 1 : 지자제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위임 사항

부록 2 : 일본의 환경관련 법령체계

부록 3 :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내용관련 지침서

## 부록 1 : 지자체 실시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위임 사항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앙기관으로서 환경부는 환경정책수립 및 조정기능, 환경관리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오염방지기술개발 및 지원기능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에 오염규제 및 집행기능을 위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중요업무 중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에 위임된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수 있으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과 더불어 중요한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등의 배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련된 사무

② 동 배출시설 관리인의 임·면 관련된 사무

③ 대기오염, 수질오염 배출부담금과 각종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대기오염과 소음·진동의 관리를 위한 운행차의 점검에 관련된 사무 등

아래의 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사항을 환경법을 기초로 하여 대기환경, 폐기물관리, 해양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소음·진동규제, 수질환경, 먹는물관리, 토양환경보전, 유해화학물질관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위임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과 각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나누었으며 권한위임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관련규정을 덧붙였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방 자치 단체	1. 대기오염 경보발령	법 제7조의 2 제1항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10조
	3. 방지사설설치의무면제승인 및 승인의 취소	법 제11조 제1항
	4.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법 제11조의 2 제2항
	5. 방지사설 설계·시공의 승인	법 제12조 제1항
	6.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13조
	7.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법 제14조 제1항
	8. 방지사설의 개선·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법 제14조 제4항
	9.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법 제15조 제3항
	10. 부적정운영신고의 수리	법 제15조 제5항
	11.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정도에 의한 배출 개선명령	법 제16조
	12.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법 제17조
	13. 사업장의 이전명령	법 제18조
	14.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19조
	15.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법 제20조 제1항
	16.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법 제20조 제2항
	17.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법 제21조
	18.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법 제24조 제1항
	19.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법 제25조

## &lt;계속&gt;

위 입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자 치 단체	20. 연료용 유류 및 기타연료의 황함유기 준 조치명령	법 제26조 제3항
	21. 연료의 제조·사용 등의 규제조치명령	법 제27조
	22.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수리	법 제28조 제1항
	23.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이행 또는 개선명령등	법 제28조 제2항
	24. 환경공무원의 보고명령등 및 검사	법 제49조 제1항제1·3 ·4호 및 제4호의 2
	25.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법 제52조
	26.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59조
	2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이전명령에 대한 협의	시행령 제14조 제2항
	28.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 면제를 받은 시설에 대한 승인	시행령 제35조 제2항
29. 고체연료 사용승인	시행령 제36조 제2항	
환 경 관 리 청 및 지 방 환 경 관 리 청	1. 대기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법 제3조 제1항
	2.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5조 제1항
	3.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5항
	4. 검사대행자인 지정·변경지정·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5항
	5.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 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 지정	법 제44·46·47조
	6. 관계공무원의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 등 에 출입,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서류 · 시설·장비 등의 보고명령등 및 검 사	법 제49조 제1항 제2 ·8·10호
	7.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법 제52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59조 제2항 제 10·11호
	9. 사업장에 대한 규정	별표 9

2. 폐기물관리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방 자치 단체	1.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법 제31조제3항 법 제32조제2항
	2.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법 제30조제4항, 제6항, 제7항
	나.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9조제1항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법 제47조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등	법 제48조
	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법 제49조
	바.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법 제50조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	법 제63조
	아.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시행령 제27조
	자.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시행령 제29조제1항
	차. 사후관리소요 비용명세서의 수리	시행령 제29조제2항
	카.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시행령 제29조제3항
	타.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시행령 제31조
	파. 담보물의 접수	시행령 제32조제1항
	하.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시행령 제32조제2항
	거.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시행령 제34조제2항
	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시행령 제35조제1항
	더.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시행령 제35조제2항

&lt;계속&gt;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환경 관리 청 및 지 방 경 관 청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	법 제30조제4항·제6항 및 제7항
	나. 기술관리인 임명 또는 기술관리대행계약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9조 제1항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 지정 및 비용징수	법 제47조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법 제48조
	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법 제49조
	바.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	법 제50조
	사.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시행령 제27조
	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시행령 제29조 제1항
	자. 사후관리소요 비용명세서의 수리	시행령 제29조 제2항
	차.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시행령 제29조 제3항
	카.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시행령 제31조
	타. 담보물의 접수	시행령 제32조 제1항
	파. 담보물의 매각·사후관리비용의 충당·차액반환	시행령 제32조 제2항
	하.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시행령 제34조 제2호
	거.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의 수리	시행령 제35조 제1항
	너.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시행령 제35조 제2항
	더.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시행령 제36조 제2항
	러.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시행령 제36조 제3항
	머.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시행령 제38조 제2항
버.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토지이용·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시행령 제38조 제3항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환경 관리 청 및 지 방 환경 관리 청	8.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	법 제34조
	10. 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
	11. 보고명령 및 검사	법 제43조
	12. 위해의 제거 또는 위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및 청문	법 제45조
	13.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대집행 및 비용 징수	법 제46조
	14.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할 때,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에 대한 청문	법 제57조
	15.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법 제63조

### 3. 해양오염방지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해양 경 찰 청* * 해 양 경 찰 청* * 해 양 경 찰 서*	1. 대량의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신고의 수리	법 제47조
	1.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대행자의 지정	법 제28조
	2.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법 제57조
	3. 검인대행수수료의 승인	법 제68조
	4. 전문방제연구기관의 추천요청	법 제39조
	1.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법 제10조 및 법 제36조
	2. 방제·청소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법 제37조
	3. 방제·청소업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법 제42조

< 계 속 >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해양 경찰 서*	4. 방제·청소업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법 제43조제1항
	5. 기름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명령	법 제43조제2항
	6. 방제·청소업의 등록취소	법 제44조
	7. 방제조치명령	법 제48조제3항
	8. 자재·약제의 보완명령	법 제49조제3항
	9. 행정기관의 방제조치	법 제50조제1항
	10. 행정기관의 비용부담조치	법 제50조제2항
	11. 연안해역에 배출된 다량의 기름등 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된 재산처분	법 제52조
	12.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신고의 수리	법 제53조제4항
	13. 폐선 및 범선해체, 긴급·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동원 등 작업계획에 관한 시정명령	법 제53조제5항
	14.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법 제55조제1항
	15. 출입검사 및 보고요구	법 제56조제1항
	16. 청문	법 제66조
	17.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0조
환경 관리 청 및 지방 환경 관리 청	1.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법 제18조
	2.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의 수리 및 폐기물처리명령	법 제19조
	3. 등록의 취소 및 운반선의 사용정지명령	법 제21조
	4.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3조
	5.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신고·사용개시신고의 수리 및 개선명령·사용정지명령	법 제4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6.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인정·대행자지정 및 형식승인취소	법 제64조제2항, 제6항, 제9항
	7.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0조
	8. 해역이용 협의업무중 환경영향평가대상 및 제외대상의 사업에 대한 협의	시행령 제7조 및 제10조

## &lt;계속&gt;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해 운 항 만 청**	1.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법 제12조제3항
	2.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법 제24조
	3.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교부	법 제25조
	4. 협약증서의 교부	법 제26조
	5.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 정지처분	법 제29조
	6.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효력연장	법 제30조제2항
	7.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재검사	법 제31조
	8. 외국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의 조치명령등	법 제33조
	9. 해양시설의 등록	법 제35조
	10. 저장시설의 설치·운영등	법 제46조
	11.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80조

\* 내무부장관이 해당기관에 권한 위임.

\*\* 해운항만청장이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권한 위임.

## 4. 자연환경보전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환 경 관 리 청 및 지 방 환 경 관 리 청	1. 녹지보전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의 인가 또는 허가에 관한 협의	법 제16조제3항
	2. 보전시설의 설치	법 제22조제1항
	3. 보호지역 및 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 위의 허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4.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 한 조치의 명령	법 제24조
	4의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생물자원에 대한 이용승인	법 제25조의 4
	5.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 등의 허가 또 는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출 등의 승인	법 제27조제1항
	6의2. 수입 또는 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반입목적의 사용용 도 변경의 승인	법 제27조제2항
	6의3. 수거처분·반송 및 이송	법 제27조의2
	7. 자연생태계위해 동·식물의 수입 등의 승인	법 제27조의3 제2항
7의2. 수입 또는 반입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반입목적의 사용용 도 변경의 승인	법 제27조의3 제2항	
8.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	
9. 보전시설의 운영·관리	법 제20조제1항	
10. 보전시설의 이용승인등	법 제21조	

5. 소음·진동규제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환경 관리 청 및 지방 환경 관리 청	1.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법 제3조제1항
	2.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 있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5조제1항
	3.4. 삭제	
	5.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지정	법 제43조, 제45조, 제46조
	6. 측정대행업자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47조제1항 및 제5항
	7.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48조제1항 및 제5항
	8.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법 제51조제1항
	9. 청문	법 제54조제6항
	10. 삭제	
	11.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1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
	12. 배출시설설치허가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시행령 제2조제5항제4호

## 6. 수질환경보전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자 치 단체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동 배출 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법 제10조제1항
	2. 방지사설설치의무면제승인 또는 승인의 취소	법 제11조제1항
	3.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법 제11조의 제2항
	4. 방지사설 설계·시공의 승인	법 제12조제1항
	5.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13조
	6. 배출시설과 방지사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법 제14조제1항
	7. 방지사설의 개선·사용중지에 대한 조치명령	법 제14조제4항
	8. 오염물질의 회석처리에 관한 인정	법 제15조제1항제1호
	9. 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의 운영에 관한 조치명령	법 제15조제3항
	10. 배출시설 또는 방지사설의 부적정운영 신고의 수리	법 제15조제5항
	11.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명령	법 제16조
	12.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법 제17조
	13. 사업장의 이전명령	법 제18조
	14. 배출부과금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19조
	15. 조업정지·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법 제20조제1항
	16. 과징금의 부과·징수처분	법 제20조의 2
	17.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법 제21조
	18.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법 제23조제1항
	19. 환경관리인의 변경명령	법 제24조
	20. 방제조치 이행명령	법 제29조제3항
	21. 방제조치의 대집행	법 제29조제4항
	22.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0조의 제1항

<계속>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23.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30조의 2제3항
	24. 개선명령 위반시의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법 제30조의2 제4항
	25.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권한	법 제30조의2 제5항
	26. 보고명령등 및 검사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7. 승인취소·명령 등 권한에 관한 청문	법 제53조
	28. 과태료	법 제60조
	29.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의 수리	시행령 제2조제8항
	30. 개선기간연장신청의 수리	시행령 제10조제2항
	31. 사업장의 이전명령 내용에 대한 협의	시행령 제12조제2항
	32.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제출자료 접수	시행령 제20조
	33.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정	시행령 제21조
	34. 자료 제출요청 및 오염도 검사	시행령 제22조
	35. 배출시설의 인정	시행령 제30조제2호
	36. 폐수의 유입제외신청의 수리	시행령 제35조제2항
37. 관리지역내의 오염원 등의 조사	시행령 제36조제3항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1. 수질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법 제3조제1항
	2. 수질오염도의 측정망 설치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5조제1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승인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	법 제26조
	4. 조치요령	법 제32조제4항
	5. 방지사설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의 지정	법 제39조, 제41조, 제42조
	6. 폐수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43조제1항 및 제4항
	7. 측정대행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항

&lt;계속&gt;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환경 관리 청 및 지방 환경 관리 청	8. 보고명령등 및 검사	법 제49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9. 권한에 관한 청문	법 제53조
	10.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11. 사업장에 대한 권한	법 제49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 및 제22 호 내지 제37호
	1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부 과 및 징수	시행령 제13조제3항

## 7. 먹는물관리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자 치 단체	1. 수원개발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9조제1항
	2. 수원개발에 따른 오염방지 조치명령	법 제9조제3항
	3.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법 제18조제1항
	4. 수처리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18조제2항
	5.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법 제18조제3항
	6.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른1일 취수량제한등 허가조건부여	법 제18조제4항
	7.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등 신고의 수리	법 제18조제5항
	8. 먹는샘물제조업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법 제19조제2항
	9.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법 제20조제1항
	10.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의 취소	법 제20조제2항
	11.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법 제22조제3항

<계속>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12. 품질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의 수리	법 제24조제4항
	13.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28조
	14.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법 제33조제2항
	15.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법 제36조제2항
	16. 원상복구명령·시설철거 등의 명령 및 필요한 조치명령	법 제37조제1항
	1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을 개발한 경우의 원상보구에 대한 대집행	법 제37조제2항
	18. 사업장폐쇄를 위한 조치	법 제38조제1항
	19.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법 제38조제2항
	20.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	법 제39조제2항
	21.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40조
	22. 청문에 관한 권한	법 제42조
	23.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법 제43조
	2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법 제51조제2항
	환경관리청	1.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법 제14조제1항
3.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법 제15조
4. 수입신고의 수리		법 제23조제1항
5. 먹는 샘물·수처리제 또는 용기의 수입에 대한 검사		법 제23조제2항
6.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법 제34조제1항
7. 청문에 관한 권한		법 제42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법 제51조제2항

## 8. 토양환경보전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1.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법 제5조제1항
환 경	2. 토양정밀조사	법 제5조제4항
관 서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법 제7조제1항
	4.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2조

##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1.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10조제1항
자 치	2. 품목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12조제1항
단 체	3. 영업의 폐업·휴업·재개업의 신고수리	법 제14조
	4.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법 제15조제1항
	5. 품목등록취소와 제조 또는 수입정지명령	법 제15조제2항
	6.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법 제15조의 2
	7. 유해물 시설·장비의 개선명령	법 제16조제1항
	8. 사업장의 이전명령	법 제17조
	9.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및 개임신고수리	법 제18조제1항
	10.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	법 제19조
	11. 특정유독물사용허가	법 제23조
	12.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법 제28조1체항
	13. 청문	법 제32조
	14.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	법 제39조
환 경 관 리 청	별표3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규정권한	법 제34조제1항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자 치 단체	1.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명령 및 그 청문 ← 주무부장관이 권한위임	법 제15조제2항
	2. 과재료의 부과·징수	법 제42조
환 경 관 리 청	1. 예치금의 반환	법 제18조제3항
	2. 제품·용기의 회수·처리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	법 제18조제4항
	3. 예치금의 차액의 징수	법 제18조제5항
	4. 예치금의 또는 차액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법 제18조제6항
	5. 예치금·차액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법 제18조제7항
	6. 채납된 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법 제19조제4항
	7.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법 제19조제5항
	8. 보고명령 및 검사	법 제34조
	9. 제품출고실적 신고의 수리	법 제19조제1항
	10.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	법 제19조제2항
	11.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여부의 확인	법 제20조제2항
	12.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	법 제22조제3항
	13.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의 조사·확인 및 예치금 또는 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법 제23조제1항
시·도 지사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권한 ← 환경부장관	법 제37조제1항

1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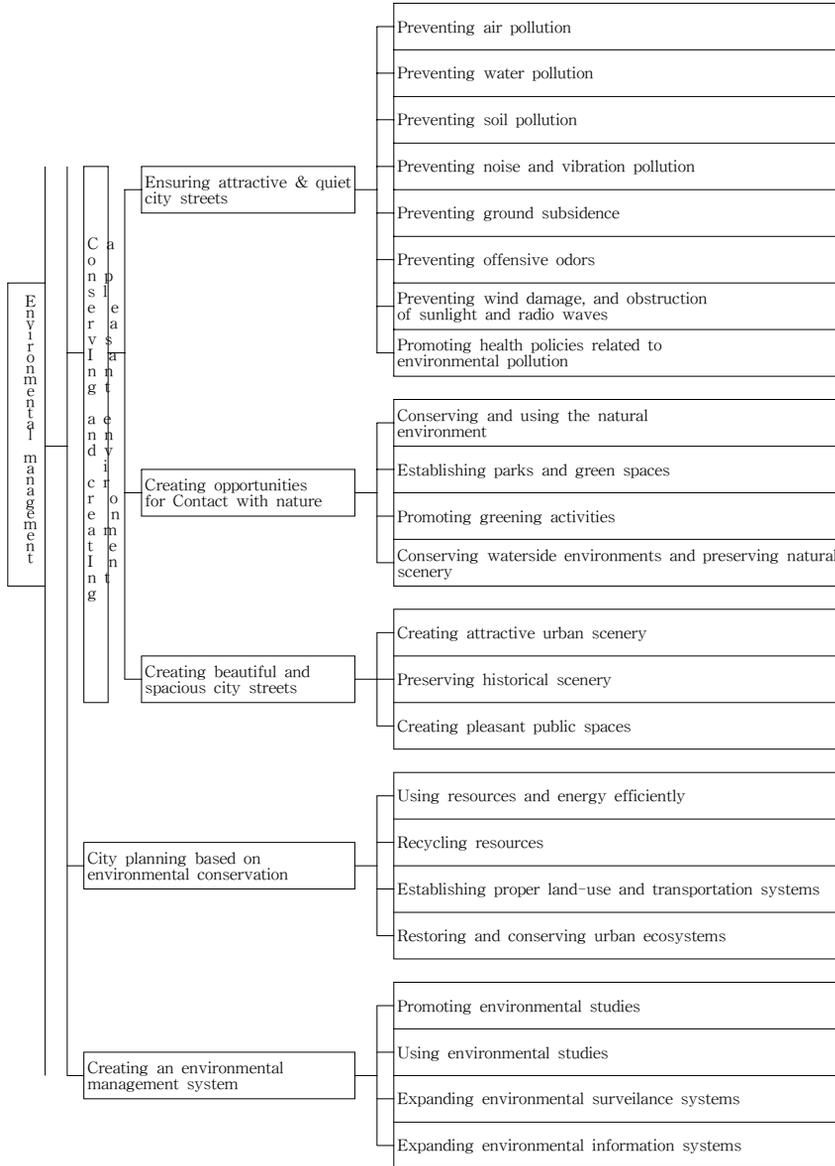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자 치 단체	1. 오·폐수병합처리승인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의2. 오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의 승인	법 제13조제1항
	2. 시공감리자의 지정	법 제13조제2항

&lt;계속&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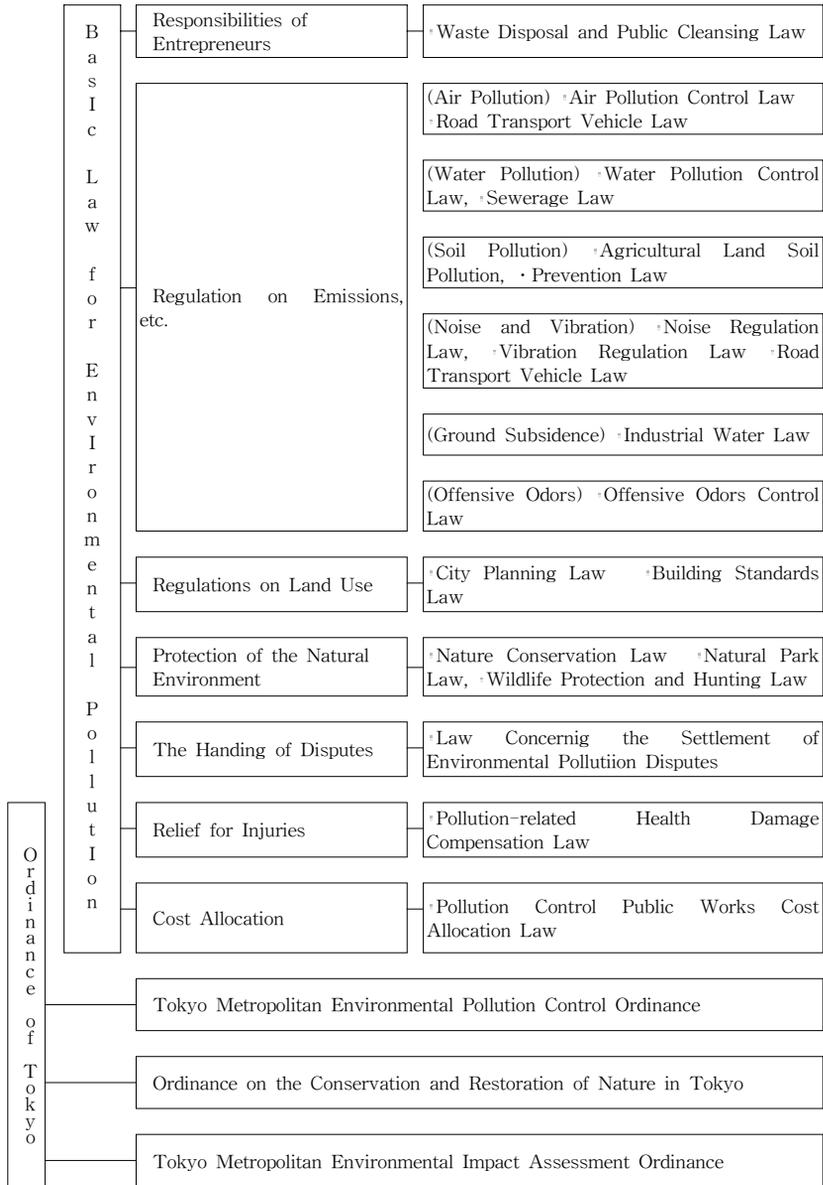
위임 기관	권한위임내용	관련규정
지 방 자 치 단 체	3. 삭제	
	4.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21조제2항
	5.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4조제1항
	5의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제한	법 제24조제3항
	5의3.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25조제2항
	5의4.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법 제25조의3 제2항
	6.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	법 제26조
	6의2. 비정상운영신고의 수리	법 제28조제2항
	7.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명령	법 제28조제4항
	8.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부과·징수등	법 제29조
	9.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	법 제30조제2항
	10. 분뇨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	법 제35조제3항
	10의2.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38조제1항
	10의3.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39조제1항
	10의4.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또는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40조
환 경 관 리 청	11. 기술관리인의 선임 및 개입신고의 수리	법 제42조제2항
	11의2. 청문	법 제51조
	12.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법 제58조
	13.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의 지정	시행령 제8조
	1. 분뇨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법 제23조제2항
	2. 축산폐수시설의 개선명령	법 제31조제2항
	3. 보고명령 등 및 검사	법 제46조

## 부록 2 : 일본의 환경관련 법령체계

### 1. 일본의 환경관리 체계



## 2. 일본의 공해·환경관계법령의 체계



3. 일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요강 제정상황 (평상 5년 현재)

지방공공단체명	명칭	공포일	시행일
북해도	북해도환경영향평가조례	소화 53. 7. 19	소화 54. 1. 18
동경도	동경도환경영향평가조례	소화 55. 10. 20	소화 56. 10. 1
신내친현	신내친현환경영향평가조례	소화 55. 10. 20	소화 56. 7. 1
암수현	공성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5. 7. 30	평성 5. 11. 1
산형현	산형현환경영향평가지도요강	평성 3. 12. 18	평성 4. 4. 1
복조현	복도현환경영향평가실시요강	평성 3. 6. 1	평성 3. 7. 1
자성현	자성현환경영향평가요강	소화 58. 4. 1	소화 58. 10. 1
방목현	방목현환경영향평가실시요강	평성 3. 3. 1	평성 3. 4. 1
군마현	군마현환경영향평가실시요강	평성 3. 3. 1	평성 3. 4. 1
기옥현	기옥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지표요강	소화 56. 2. 13	소화 56. 6. 1
천엽현	천엽현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지표요강	소화 55. 12. 4	소화 56. 6. 1
신석현	신석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3. 4. 1	평성 3. 8. 1
부산현	부산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2. 6. 11	평성 2. 10. 1
복정현	복정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4. 11. 13	평성 4. 12. 1
산리현	산리현환경영향평가등지표요강	평성 2. 9. 1	평성 2. 12. 1
장야현	장야현환경영향평가지도요강	소화 59. 1. 5	소화 59. 4. 1
정강현	정강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4. 7. 15	평성 4. 11. 1
애지현	애지현환경영향평가요강	소화 61. 3. 31	소화 61. 10. 1
삼중현	삼중현환경영향평가에 실시에 관한 지표요강	소화 54. 3. 9	소화 54. 4. 1
자하현	자하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요강	소화 56. 3. 16	소화 56. 3. 16
경도부	경도부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원. 5. 1	평성원. 9. 1
대관부	대관부환경영향평가요강	소화 59. 2. 20	소화 59. 4. 1
병고현	병고현개발정비사업등에 관계하는 경영향평가의 수속에 관한 요강	소화 54. 3. 5	소화 54. 4. 1
화가산현	화가산현환경영향평가지도요강	평성 4. 7. 1	평성 5. 1. 1
오취현	오취현환경영향평가실시요강	평성 3. 11. 15	평성 4. 2. 15
도근현	도근현환경영향평가실시요강	평성 3. 4. 30	평성 3. 8. 1
강산현	강산현환경보전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지도요강	소화 53. 12. 28	소화 54. 1. 1
광도현	광도현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지도요강	소화 57. 12. 25	소화 58. 3. 16
산구현	산구현환경영향평가등지도요강	평성 2. 4. 1	평성 2. 10. 1
덕도현	덕도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4. 8. 25	평성 5. 2. 1
향천현	향천현영향평가실시요강	소화 58. 9. 16	소화 59. 3. 16
고지현	고지현환경영향평가지도요강	평성원. 3. 31	평성원. 10. 1
북강현	북강현환경영향평가실시요강	소화 48. 4. 2	소화 48. 4. 2
장기현	장기현환경영향평가사무지도요강	소화 55. 7. 1	소화 55. 8. 1
궁기현	궁기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4. 4. 1	평성 4. 10. 1
녹아도현	녹아도현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2. 12. 3	평성 3. 4. 1
충승현	충승현환경영향평가규정	평성 4. 9. 18	평성 5. 2. 1
정삼현			
추진현			
석천현			
기현			
내식현			
애현			
좌지현			
태분현			
대분현			

## &lt;계속&gt;

지방공공 단체명	명칭	공포일	시행일
천기시	천기시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소화51. 10. 4	소화52. 7. 1
천엽시	천엽시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에 관한 지도요강	평성 4. 4. 1	평성 4. 4. 1
횡빈시	횡빈시환경영향평가지도지침	소화55. 1.14	소화55. 4. 1
명고옥시	명고옥시환경영향평가지도요강	소화54. 2. 5	소화54. 4. 1
경도시	경도시환경영향평가요강	평성 5. 10.20	평성 6. 4. 1
신호시	신호시환경영향평가요강		
찰시			
선대시			
대시		소화53. 7.20	소화53. 7.20
조시		소화51. 10. 4	소화52. 7. 1
북구주시		소화54. 2. 5	소화54. 4. 1
부시		소화53. 7.20	소화53. 7.20

자료 : 환경백서(각론), 평성5년판, 환경청(編), p.16

주 : 조례 4단체, 요강등 39단체, 계 43단체(도도부현 37, 정령지정도시 6)

### 부록 3 : 외국의 환경영향평가 내용관련 지침서

#### 1. EIA절차의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

1.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에 대한 고려의 광대한 범위에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국가적, 지구적인 지속성을 유지하고 달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2. 평가 requirements 명확하고 자동적으로/ 환경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합법적인 판단 within or outside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3.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단지 수용가능한 의견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적의 의견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평가목적에 대한 주요한 검사와 대안의 비교평가가 필요하다.
4. 평가 requirments 는 법상에서 수립되어야하며 전문성, 의무성, 실행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5. 평가작업과 의사결정은 반드시 공개적이며 참여적이며, 공평해야 한다.
6. 승인기간과 조건은 반드시 (enforceable)하며, 승인절차는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행명령의 실행이 있은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효과적인 수행을 촉진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8. 절차는 전반적인 생물리학과 사회경제적인 주체(objectives)의 배경 및 현재의 사업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안되는 사업의 관리 및 제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체계와 연결된 평가작업을 위한 규정(provisions)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료: Gilson, 1993.

##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평가기준

1. EIA제도가 명확하고 전문적인 법적조항에 근거를 하는가?
2. 모든 주요한 사업(significant actions)의 잠재적인 환경영향이 평가되었는가?
3. 사업시행자는 적절한 대안사업의 환경영향이 고려된 여러 가지 검증을 EIA절차상에 반영하였는가?
4. 환경예비성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5.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scoping이 이루어졌으며 명확한 지침(specific guidelines)이 제시되었는가?
6. EIA보고서가 요구사항을 충분하게 서술하였는지, 그리고 부적합한 EIA보고서의 허가를 막을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는가?
7. EIA보고서가 공개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사업수행자가 이러한 사항을 제고하였는가?
8. EIA보고서의 결과 및 재검토사항이 사업결정에 있어 주요한 결정요인이 되었는가?
9.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모니터링이 수행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EIA절차의 초기단계에 반영 되었는가?
10. 사업으로 인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EIA절차에서 다양하게 고려되었는가?
11. 우선 전문가의 자문 및 참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EIA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
12. EIA제도를 모니터하고, 필요할 경우 그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피드백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되었는가?
13. EIA제도의 requirements 제정비용과 시간이 충분히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납득할 만한 환경적 이익에 의해 그들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14. EIA제도가 프로젝트뿐 만 아니라 중요한 개발프로그램이나 계획, 정책상에 적용되는가?

자료 : Ch. Wood, 1995.

### 3.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적으로 재검토되었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제고된 사항을 반영하였는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적합성여부를 결정하는 검토기준이 존재하는가?
- 관련전문인이 포함된 독자적인 재검토 단체가 존재하는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재검토 결과가 작성되었는가?
- 사업시행자에게 다음에 이루어질 검토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가?
- 평가서초안과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는가?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침서가 존재하는가?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상에 전문가 자문 및 참여가 요구되는가?
- 더 많은 정보가 보완되어질 경우 그에 대한 자문 및 참여가 요구되는가?
- 검토 결정에 대하여 제청할 권리가 있는가?
-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기능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자료 : 전계서

## 4. 뉴질랜드의 EIA 보고서 평가를 위한 검토사항

1. 사업시행자와 승인기관이 EIA의 개요 및 체계(골격)를 받아들일 경우, 영향평가팀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in a satisfactory way) 승인된 형식을 따르는가?
2. 평가자가 지역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그들 연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태도와 정서를 조사한 증거가 있는가?
3. 제안된 프로젝트의 성격이 명확히 서술되었는가? 특히, 환경과의 상호관계와 같은 주요한 절차가 확인되고 설명되어 있는가?
4. 환경에 있어서 제안된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영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논리적이며 통합된 접근이 이루어지는가?
5. 연구의 적용범위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가? 사회적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가? 단기적인 영향뿐 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까지도 고려되었는가? 직·간접적인 영향이 고려되었는가?
6. 평가자가 발생가능한 영향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졌는가? 그러한 예측이 적합한 방법과 자료를 기초로 하였는가? 또한 발생가능한 영향의 가능성 및 엄정성, 중요성을 지적하였는가? 부정적인 효과뿐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는가?
7. 누적되는 영향을 어느정도로 언급하는가? (그 영향이란, 즉 그것 자체로는 작지만 신청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영향과 함께, 이미 그 지역안에서 수행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에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8. 환경영향평가자가 비정상적인 운영상태(abnormal operating condition)의 결과로 발생 가능한 환경적 영향을 검사하였는가? (즉, 우발적인 화재나 특별한 자연재해와 같은 환경영향 등)
9. 환경영향평가자가 논리적으로 균형있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예측과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였는가? 발생 가능한 효과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자체 평가를 부과하고자 하는가?

<계속>

10. 예견된 환경영향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영향을 받는 커뮤니티(지역 및 국가규모)의 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가?
11. 예측된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제안된 완화조치와 별개로 예측된 영향이 명확히 진술되었는가? 완화조치에 대한 실행의 중요성, 즉 환경의 중요성 (consequences)가 명확히 언급되었는가?
12. 어떠한 형태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제안되고, 앞으로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중요하고 다양한 지표가 제시되는가?
13. 영향평가팀이 환경적으로 긍정적·부정적인 잠재적 효과를 약속한 요약문을 제출하였는가?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가? 중립적인 방법으로 제안에 대한 중요성이 제시되는가? 과학적인 정보가 전문적인 사람들이나 단체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가?

자료 : 전개서

## 5. 평가서의 일반적 내용에 대한 검토기준

고려사항	기준
A. Readability (판독 용이성)	1. 명확성 2. 모호성 배제 3. 특수한 과학적 용어의 사용금지 : 모든 과학용어는 명확히 풀어서 설명할 것
B. Flavor and focus (견해 및 초점)	1. 결과에 대한 공정하고 바른 해석 2. value-imparting한 형용사나 문장의 사용금지 3. 경제적·환경적·생태학적 영향과 생산성간의 혼동이나 혼용배제 4. 입증되지 않은 일반론의 배제 5. 상반되는 설명 배제
C. 표현 (Presentation)	1. 일관된 형식 사용 2. 가장 효과적으로 표나 지도, 다이어그램 등의 사용 3. 철자, 문법, 구두점 등의 정확한 사용
D. 정량화 (Quantification)	1. 명확히 정의되고 이해가능한 용어의 사용 2. 정량화하기에 용이한 항목, 영향, 효과 및 행위에 대한 명시
E. 자료 (Data)	1. 자료출처의 명시 2. 최근자료의 사용 3. 가능한 현장자료(field data) 수집 programs의 사용 4.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수집과정을 사용 5. 비공식적인 자료의 사용근거를 밝힘
F. 방법 및 절차 ( Methods and procedure)	1. 최상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인 평가절차, 과학적 기술 및 모델의 사용 2. 모든 절차와 사용된 모델의 정의 및 설명 3. 모든 판단의 출처 명시 4. 전문적인 기준에 의한 절차와 모델의 사용
G. 결과의 해석 (Interpretation of findings)	1.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배제시키기 전에 모든 영향범주에 대하여 고려 및 논의 2. 모든 상반되는 논제에 대하여 철저한 조치 및 결과상의 관련성 논의 3. 중요한 불확실성(significant uncertainty)을 갖는 결과범위에 대하여 개별분야의 관련성 고려 4. 각각의 선택적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채택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설명 첨가 5. 모든 해석 및 절차, 전문적인 조사를 거친 결과등에 대한 조사 및 검증

자료 : 전개서